

---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종합편

정도희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글로벌법제 연구 12-22-⑤-1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 종합편 -

정 도 희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종합편 -

Study on Legislation of the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 Summary Report -

연구자 : 정도희 (경상대학교 교수, 전 초청연구원)  
Jeong, Do-hee

2012. 11. 30.

## 요 약 문

### I. 배경 및 목적

- “이주의 시대”이며, 우리 사회 또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음. 문화적 다양성 증가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소수집단을 포용하여 공존해야 할 상황임
-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고 규정하여 포용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음
- 교육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일반 조항(제4조)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 따라서 이주민의 경우도 교육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함
-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임

- 다문화교육은 인권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함. 또한 시혜적인 복지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권리로써 시민사회교육으로 발전하여야 함
- 본 연구는 다문화시대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II. 주요내용

- 다문화시대 국제사회의 합의 개괄 및 한국의 다문화 현황 개괄
- 다문화시대 외국인 증가에 따른 문제 상황과 교육의 부각을 검토
- 다문화교육 현황과 문제점 검토
- 다문화교육 방안의 법제화 제안

## III. 기대효과

- 향후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에 있어 기초자료 활용
- 다문화 교육관련 법제에 대한 제언을 함으로써 입법적 대안 제시

▶ 주제어 :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 글로벌 다문화교육, 글로벌 다문화 교육법제화, 시민교육

---

---

## Abstract

---

---

###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Now is epoch of migration. Korea has becoming multi-cultural society. The number of resident aliens and immigrants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Many different cultures from around the world live together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there is cultural diversity in such a society, there is conflict. So, above all, coexistence with minority groups is important.
- Curren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take measures such as education, publicity, and correction of resonable institutions, etc. to ensure that Koreans and foreigners in Korea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s history, culture and institutions”. The Act emphasize on coexistence and tolerance.
- Current Framework Act on Education stress on equal opporrtunity in education. The Act says that “No citizen shall be treated with discrimination in education for reasons of sex, faith, race, social standing,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s, etc”. So immigrants is the subject of the right to education.

- The objectives of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are to decrease educa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children, and to change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training of Korean citizens.
-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shall be performed in the view of human rights as a citizen training.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oint out current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measure for legislation.

## **II. Main Contents**

- Summar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present conditions in multicultural age.
- Summary of problematic situations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foreigners and emphasis on education in multicultural age.
- Summary of conditions of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roblems.
- Suggestions on how to legislate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 **III. Expected effect**

- Using as baseline data of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al policy in the future.

- Suggesting the legislative alternative proposing some measures about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 Key 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ism,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 Global multicultural educational legislation



# 목 차

요 약 문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3
제 1 절 다문화시대 국제사회의 합의 .....	13
1. 국제 사회 합의 개괄 .....	13
2. 세부적 검토 .....	14
3. 「국제다문화교육연합」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 .....	21
제 2 절 다문화 관련 용어 정의 .....	22
1. 다문화와 상호문화 .....	22
2.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	23
제 3 절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의 다문화현황 특징 .....	24
1. 한국의 다문화현황 .....	24
2. 특 징 .....	25
제 2 장 다문화사회 상황과 교육의 부각 .....	27
제 1 절 다문화시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인식 .....	27
1. 일반의 인식 .....	27
2.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	28

제 2 절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	29
1.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어려움	29
2. 인권침해와 범죄피해의 문제	31
3. 범죄가해의 문제	34
제 3 절 다문화주의와 교육	36
1. 다문화교육의 개념	36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37
3. 다문화교육의 방향	38
제 3 장 다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41
제 1 절 한국 사회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정책	41
1. 다문화학생 현황과 교육	41
2.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44
제 2 절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 상황	60
제 4 장 글로벌 다문화교육방안 및 법제화	63
제 1 절 다문화교육관련 법제	63
1. 헌 법	63
2. 현행 교육기본법	64
3. 다문화가족지원법	64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5
5. 기타 법안	66
제 2 절 다문화정책과 교육관련 외국 정책 및 법제	70
1. 캐나다	70
2. 프랑스	71

3. 스페인 .....	72
4. 그리스 .....	76
5. 미 국 .....	77
6. 아일랜드 .....	81
제 3 절 글로벌 다문화교육 정책 및 법제화 현황 .....	83
1. 민주사회통합을 위한 글로벌 다문화교육 .....	83
정책 방안 .....	83
2. 대상별 글로벌 다문화교육 정책 방안 .....	86
3.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 방안 .....	92
제 5 장 결 론 .....	107
참 고 문 헌 .....	109
부 록 .....	11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다문화시대 국제사회의 합의

#### 1. 국제 사회 합의 개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져왔다. 1948년 UN의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래로 조약, 협약 및 규약의 형태로, 또는 선언과 권고의 형태로 이러한 합의는 진행되어 왔다.

또한 다문화교육 전문가 조직인 「국제다문화교육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은 폭넓은 다문화 교육, 문화 간 교육, 반인종주의 교육, 인권 교육, 갈등 해결, 다언어 문제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sup>1)</sup>

국제사회에서는 “문화 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 국제회의에서 강조되어 왔으며, 2003년 UNESCO 「문화 간 교육 지침」(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에 문화간 교육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기술되어 있다.

- ① “문화간 교육은 문화적 적합성과 상호성을 갖춘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한다.”
- ② “문화간 교육은 적극적이고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에 필요한 문화적 지식, 갖추어야 할 태도 및 능력을 학습자 개개인 모두에게 가르친다.”

---

1) Carl A. Grant, The Evolu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Journey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참조.

- ③ “문화간 교육은 모든 학습자가 각 개인간, 인종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집단간, 국가간 이해와 존중,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지식과 태도, 능력을 가르친다.”<sup>2)</sup>

## 2. 세부적 검토

다문화교육 관련 국제 합의를 시간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6장 제2절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사이에서 이해, 관용,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sup>3)</sup>

### (2) 유럽 인권 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럽 회의, 1950)

제2장은 부모는 이 교육을 받을 것에 대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종교와 철학적 신념에 따라 교육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

2) 서종남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의 번역(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2010, 235면)인용함.

3)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서종남 경기도 다문화교육센터 부소장의 번역(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2010, 203면)인용함.

(3) 인종차별철폐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UN, 1965)

제5장은 모든 당사국들이 “인종 차별을 금하고 제거해야만 하며...인종, 피부 색, 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이의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그리고 교육과 훈련할 권리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한다.

(4) 1974년 11월 29일 18차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인 이해, 협력 그리고 평화와 교육과 관련한 UNESCO권고문”(General Conference of UNESCO agreed upon a 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 ① 제 3 장 : “교육에는 UN 헌장, UNESCO 설립 헌장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술된 인권 선언의 제26장 2절에 명시된 목적이 담겨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장 2절 생략)
- ② 제 4 장 : “모든 개인이 제3절에 언급된 개인과 공동체의 삶,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주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목적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국제적 결속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이 교육 정책의 주요한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a) 모든 수준의,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의 국제적 범위와 전 지구적인 관점
  - (b) 국내의 민족 문화와 다른 국가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문화, 문명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
  - (c) 사람들과 국가들 사이의 늘어나는 지구적인 상호 의존에 대한 인식

- (d)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
- (e) 권리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개인과, 사회 집단 그리고 국가에  
게 지워진 의무에 대한 인식
- (f) 국제적 결속과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이해

③ 제17장 : “회원국들은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상호 이해하도록 하  
기 위해 교육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에서, 다른 문화,  
상호간 영향, 그들의 관점과 삶의 방식 대한 연구를 장려해야 한  
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그러한 연구는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  
인 문화 이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외국어, 외국의 문명과 문  
화적 전통을 가르치는 것에 중요성을 둔다.”

④ 제33장 :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교사들과 다른 교육 전문가  
들이 이 권고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도록 준비하고 보장  
할 방법과 수단을 개발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한다. (33e) 교육상  
혁신을 일으키고 교사들의 훈련을 지속할 능력과 소망과 같은 태  
도와 기술을 발전시킨다 ; 협동작업과 학제 간 연구에서 ; 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인식 ; 바람직한 기회를 창조하고 이용할 능력”

(5) 인종과 인종편견에 관한 유네스코 선언(UNESCO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1978)

제 5 조 제 2 항 :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유관 기관과 교육 책  
임자들은 교육 자원이 인종 차별 반대에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할 책임이 있다.”

(6) 유럽 의회 각료 위원회: 인권 교육에 관한 결의(78)41 (1978년  
10월 25일 294차 차관 회의에서 각료 위원회에 의해 채택됨)

“각료 위원회, (...) 모든 개인은, 가능하면 빨리, 인권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진정한 민주 사회의 특성을 갖춘

인권과 근본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고무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회원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장한다 :

- a.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가르침이 교육과 훈련, 착수와, 서비스 내의 모든 수준의 교과 과정에서 적절히 행해져야 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의 교육 시스템의 맥락에서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

(7) 1981년 11월 25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의 제거에 관한 선언”

제 5 조 제 3 항 : “아동은 종교나 신념을 배경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사람들 사이의 이해, 관용, 우정, 평화, 세계적인 형제애, 다른 이들의 종교,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신, 아이들의 에너지와 재능이 동료를 위한 봉사에 헌신하도록 하는 온전한 양심을 가진 성품 속에서 자라야 한다.”

(8) 유럽 회의: 불관용-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한 선언  
(1981년 5월 14일 68번째 회의에서 각료 회의에 의해 채택됨)

“유럽 회의의 각료 회의는,

- I. 관용과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의 평등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와 다원적 사회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 II. 그들의 기원, 영감 또는 목적, 그리고 인간의 삶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일으킨 폭력 행위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불관용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III. 다양성의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유럽 회의의 회원국의 초석의 원칙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위



한 현장, 이러한 권리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에 대한 믿음을 기억한다.

IV. (이하와 같이)결의한다(...중략)

- iii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상위 학교까지 다른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풍토를 만들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요구와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인식 촉진

(9) 유럽 회의 : 2세대 이민자에 관해 회원국들이에 대한 각료 회의의 권고 R(84)9 (1984년 3월 20일 368차 차관 회의에서 각료 회의에 의해 채택됨)

“각료 회의는(...중략) 회원국의 정부가 다음과 같이 할 것을 권고한다 (...중략)

IV. 교육과 문화에 관한 권고문

- a. 가능하면, 상호간 협력이 적절하게 작용될 때, 2세대 이민자들의 교육, 문화적 발전을 촉진한다.
- b. 교육에서의 문화 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c. 다른 문화적 배경의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능력과 지식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취한다.

(...중략)

- f. 이민한 소녀들과 여성들이 공동체의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직업 훈련을 속에서 통합을 촉진한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

- g.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젊은 이민자들의 사회 직업적인 통합을 장려한다.

- h. 가능하다면, 출생국과의 협력 속에서 통합을 통해 부모 출생지의 문화를 중요시 여기며, 출생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가르친다.
- i. 도착의 교사들, 다른 출생 국으로부터 온 교사들, 교육 공무원과 성인 교육자들에 대한 문화 간 훈련을 장려하고, 가능하다면, 출생국과의 협력 속에서 적절한 교육 지원을 장려한다.
- j. 이민 2세대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지역 사람들과의 친밀한 접촉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생활에 참여하도록, 주로 협력을 통해 문화적 활동의 발전을 장려한다.

출생국에서는 ;

- k. 교사의 훈련과 사람들의 정보를 위해, 생활 조건과 현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지식 보급에 힘쓴다.
- l. 돌아오는 젊은 이민자들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해외에서 얻은 문화적, 언어적, 사회적 경험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 생활 속에서 통합되고 참여하도록 돕기 위해 수단을 강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유럽 회의 각료 회의: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 간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의 교사들 훈련에 관한 각료 회의의 권고문 No. R(84) 18(1984년 9월 25일 375차 차관 회의에서 각료 회의에 의해 채택됨)

“C. 현지국의 정부는

- 1. 교사 연수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을 체류국의 언어를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준비, 체류국과는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로부터 온 아동들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포함한다.

2. 적절하다면,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고 이민자 아동들이 경험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교생들과 교사들이 출신국 언어들 중 하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적절한 기회를 주고 이 언어 과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3. 적절하다면, 국가의 법률에 따라 출신국 교사의 지위와 학교 공동체에서 그들의 역할을 배려한다.
4. 출신국 교사들에게 그들의 체류국의 문화, 삶의 방식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 동시에, 이민 역사와 체류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출신국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를 융합하는 학교 교과 과정과 교육학 차원에서 이민자 공동체 출신의 교사들의 채용을 장려한다.”

(11)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아동교육은 아동의 부모와 그들의 문화 정체성, 언어와 가치 기준에 대한 존중 및 그 아동이 거주하고 있거나 태어난 국가의 국가적 가치 기준, 자신의 것과 상이한 문명에 대한 존중...존중심을 기르는 방향에 맞추어져야 한다.”

(12) 1992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의 인종, 종교와 언어적 소수민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1992)

제 4 조 제 4 항 : “국가는 자기 영토 안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역사, 전통,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수

집단에 속한 개인은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 습득의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13)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 ① 제 2 조 :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적 체계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 이바지한다.”
- ② 제 5 조 : “누구든지 자신의 문화 정체성이 충분히 존중되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자격이 있다.”

(14)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제10조(a) “문화 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보장된 때에만 보존되고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해되고 촉진됨으로써만” 가능해진다.

3. 「국제다문화교육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

현재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로 국제다문화교육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ntercultural Education)이 있다. 이것은 국제적, 국가적 지역 수준 및 학교와 교실에서의 문화 간 교육 발전과 이행에 관여한 교육 전문가들의 국제 조직이다.

국제다문화교육연합에 의하면, “문화 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 개념에는 ① 문화 간 또는 국제적 이해, ②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과 존중, ③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증 부정, ④ 인권과 시민, 교육 시스템을 더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동등한 기회, ⑤ 결과의 공정성을 얻기 위한 지식과 배움의 과정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포함한다.

또한 문화 간 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① 인권 원칙에 근거한 명백한 학교 정책 지침
- ② 다른 집단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회 제공
- ③ 배움의 과정에 대한 모든 학생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공헌의 가치 인식
- ④ 광범위하고 접근 가능한 교과 과정을 위한 기준
- ⑤ 교실에서의 최적의 반응 과정을 위한 기준
- ⑥ 여러 언어 사용의 장려

## 제 2 절 다문화 관련 용어 정의

### 1. 다문화와 상호문화

“다문화”는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관심사이거나 그 용어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못하여 혼란을 일으킨다. 여러 인종이 모인 이민사회의 문화에 대한 용어로 다문화(Multi-culture), 상호문화(Inter-culture), 초문화(Trans-culture) 등이 혼재되어 쓰이는데, 한국 사회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다문화”이다.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에서는 “상호문화”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데, “상호문화”는 미국의 상호문화교육국(Bureau of Intercultural Education)에서 유래된 용어이고, 영미의 “다문화”와 차별화된다.<sup>4)</sup>

4) 장한업, 프랑스 상호문화교육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한국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 2012. 6. 22. 워크숍자료집, 23-24면 참조.

우리 사회에서는 “다문화”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다문화”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본래 단일민족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과 함께 “상호문화” 용어사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5)</sup>

## 2.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다문화”와 “상호문화” 간 용어 사용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용어 사용을 두고 논란이 있다.

“다문화교육”은 1960년대 미국에서 흑백차별, 1963년 남녀차별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한 국내의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며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공문서에 처음 등장해 2007년 공식화되었다.<sup>6)</sup> 현재 국내에서는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에 비해 유럽은 “상호문화교육(Interkulturelle Erziehung)”이라는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은 1970년대 이민자녀의 학교교육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와 독일에서 많이 연구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유럽회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시민교육의 하나로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해가고 있다.<sup>7)8)</sup>

5) 장한업 교수는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보다는 “이민자가정”이라는 용어가, “다문화교육”보다는 “상호문화교육”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합하다고 본다.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참조.

6)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교사 연수 등 다문화교육 저변 확대라는 표현을 통해 이 용어를 보편화하였다. 장한업,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이중언어학 제46호, 이중언어학회, 2011, 347-366면.

7)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 교육사회학학회, 2011, 118면.

8)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에 대하여는 김현덕, 다문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의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2007, 2면 이하 참조.

### 제 3 절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의 다문화현황 및 특징

#### 1. 한국의 다문화현황

2012년 4월 기준 총출입국자는 3,990,650명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출입국자는 1,445,430명에 다다른다.<sup>9)</sup> 외국인의 출입은 최근 증가해 왔는데, 특히 최근 10년간 외국인 입국자의 수를 보면,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명, '11년 명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다.<sup>10)</sup>

(표1) 최근 10년간 외국인 입국자 수 (단위 : 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204,670	4,657,595	5,750,545	6,008,527	6,425,257	6,425,257	6,823,812	7,833,998	8,766,915	9,765,902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도 증가하여, 2007년 8월 최초로 100만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인구대비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2% 대에 진입하였다. 2 통계에 의하면, 2012년 4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1,438,671명 이고 이 중 등록외국인은 974,593명이다.<sup>11)</sup>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sup>12)</sup> 자녀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9) 이보다 1년전인 2011년 4월 기준 출입국자 총수는 3,218,239명이었고 이 중 외국인 출입국자는 1,445,430명이었다. 총출입국자는 1년 사이 24.0퍼센트 증가하였다.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4월호 인용.

10)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4월호 인용.

11) 이보다 1년 전인 2011년 4월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354,414명이었다. 1년 사이 6.2% 증가하였다.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2년 4월호 인용.

12) 여기서 다문화가족은 귀화 및 인지를 통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의 합임.



(표2)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수 (단위 : 명)<sup>13)</sup>

구분	2007	2008	2009	2010
결혼이민자	126,955	144,385	167,090	181,671
다문화가족 자녀수	44,258	58,007	107,689	121,935

## 2. 특 징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본래 “단일민족”,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에 이주민에 대한 문제가 국가의 정책에서 등장한 것은 근래의 변화이다. 국제결혼<sup>14)</sup>과 노동력의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급증은 이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다. 단일민족에 가치를 부여하던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현실에 처해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폭넓게 탈북자, 조선족 등도 포함되는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분단국가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민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만이 산재하고 있고, 통일된 기구 없이 관련 정책은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 사회의 다문화는 결혼이민자와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도래되었고, 비록 정부에 의해 다문화정책은 시행되고 있지만 혼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13) 출처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안).

14) 국제결혼의 증가원인에 대해 ① 왜곡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 못하는 남성 급증 ② 결혼하지 않는 여성 증가 ③ 경제적, 문화적 요건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 못하는 한국 남성 증가 ④ 인신매매성 위장결혼을 용인하는 사회분위기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갑성, 정체성 형성과 다문화교육-결혼이주민 가정을 중심으로-, 141면.



## 제 2 장 다문화사회 상황과 교육의 부각

### 제 1 절 다문화시대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인식

#### 1. 일반의 인식

다문화 시대 도래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에 정체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과 관용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실태는 관련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 (1) 2007년 서울대학교 조용달 교수가 연구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설문 조사에서는 “일반가정의 학부모와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과 가족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단지 일반가정의 학부모의 6.6%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선택하였다.<sup>15)</sup>
- (2) 2008년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치관에 관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설문 조사에서 “다문화사회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중국 청소년의 94.7%, 일본 청소년의 80.4%가 긍정적인 선택을 한 반면에 우리의 청소년은 불과 77.9%만이 긍정적인 선택을 하여, 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sup>16)</sup>
- (3) 2009년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제결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 5.8%, “긍정적”이 27.2%, “보통”이 47.1%, “부정적”이 16.3%, “매우 부정적”이 3.6%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

15)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중 2.2%만이 ‘아니다’를 선택하였다. 조용달 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7, 102면.

16) 송미영, 전개논문, 75면.

근거로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마찰우려”가 35.5%, “자녀교육(교육 혼혈아로 사회적 냉대)”가 28.4%, “민족 주체성 상실우려”가 20.5%, “언어 소통의 불편”이 12.4%, “국적 취득에 대한 거부감”이 2.0%로 나타났다.<sup>17)</sup>

이러한 결과에서 보이듯 한국 사회는 이주민을 친구, 이웃을 넘어 우리의 국민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sup>18)</sup>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듯,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스스로도 부모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비율이 36.7%로 나타났다.<sup>19)</sup> 즉,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 일반의 인식인 것으로 생각된다.

## 2.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2011년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sup>20)</sup>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국민의 정체성, 즉 한국인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공존”, 즉,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찬성 비율이 한국은 36%에 불과했는데, 이것은 유럽 18개국이 74%로 나타난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즉, 우리 사회에는 문화 공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17) 국제결혼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개방화 시대로의 변화”가 38.8%, “외국의 문화체험 및 이해폭 넓어짐”이 31.2%, “인구증가에 도움”이 17.2%, “외국인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계기”가 8.3%, “자녀교육에 도움”이 2.1%로 나타났다. 출처 :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법무통계담당관 통계 2009.

18) 이마저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둔다. 이러한 지적으로 윤상우·김상돈,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6권 제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94면.

19) 조영달 외, 전개논문, 44면.

20) 2011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월 25일 전국 19세~74세 일반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후 면접을 통해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외국인이 일자리 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또한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그런데 의외인 결과는 이주민과 단순접촉이나 표면적 접촉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것에 도움이 되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교류가 빈번한 경우는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 직장, 학교 동료 중에서 이주민이 있을 경우 수용성이 높지만, 친인척 중에 이주민이 있는 경우는 다문화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요컨대, 다문화수용성 검사 결과, 우리 사회는 다문화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이면서도, 이주민과 한 공동체에 머물며 접촉이 잦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 절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

### 1.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어려움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편견, 차별, 인권침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아동, 즉 외국인의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

21) “일자리감소, 범죄율 상승, 국가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각각의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각각의 찬성률은 한국은 약30, 36, 38%, 독일은 약73, 53, 56%, 영국은 약 59, 39, 66%, 프랑스는 약57, 49, 70%로 나타났다.

22) KMCL은 51.17점으로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친구인 경우 57.91점, 학교 직장동료인 경우 53.77점으로 나타났고, 이웃인 경우 50.03점, 가족 인척인 경우 51.81점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17일 여성가족부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인용.

국내 외국인 수는 2007년 722,686명에서 2011년 1,265,006명으로 최근 5년간 1.8배 가량 증가하였고, 국내 외국인 자녀 수는 2007년 44,258명에서 2011년 151,154명으로 3.4배 가량 증가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초중고의 71.8%인 7,989개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1명이상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 학교 부적응,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sup>24)</sup> 성장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 존중감이 저하되며,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정서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언어발달 지체와 학습력의 문제가 일어나기 쉬운데, 이는 한국어에 미숙한 부모(주로 어머니)는 아이와 한국어가 아닌 부모의 모국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로 인한 교육환경 제공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sup>25)</sup>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은 부모의 불법체류나 기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탈북자의 자녀들 또한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낮기 때문에 학업에 문제가 생기기 쉽다.<sup>26)</sup>

중도입국자녀들도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한국에 입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하여 정규 학교교육을 받기 어렵고, 새로 형성된 가정 내에서 관계형성 과정에서 어려움과 정서적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다.<sup>27)</sup>

24) 이러한 지적으로 이경수, 전개논문, 762-765면 참조.

25) 6세 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일반 가정이 56.8%인데 반해 결혼이민 가정의 27.3%에 불과하다. 김미라,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지원 필요성 참조.

26) 탈북자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5.7%, 중학교 취학률은 49.1%, 고등학교 취학률은 6.6%이다. 취학 이후 상급학교로 갈수록 중도 탈락률이 높다.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이다. 이들의 중도 탈락 원인은 연령 차이, 수학 능력 부족 등에 따른 학교 부적응이다. 이들은 학교 성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며, 중학생 90.3%, 초등학생 58.8%가 학교 성적을 고민한다. 2011년 다문화거점학교 담당교원 워크숍 자료집 참조.

27) 2011년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연령대별로 보면 14세에서 19세인 청소년기 중국입국자가 58%로 가장 많으며, 전체 90%가량이 중국 조선족과 중국인이다. 중도입국자녀의 문제에 대하여 박봉수, 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인천

더구나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입는 비율이 일반학생에 비해 15배나 높은데,<sup>28)</sup> 이처럼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크다.

## 2. 인권침해와 범죄피해의 문제

### (1)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겪는 대표적인 피해가 가정폭력이다. 한국 사회의 배우자 부족의 대안인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성폭력피해 등을 경험하곤 한다. 국제 결혼하는 비율 못지않게 이혼하는 비율도 높다. 이러한 이혼의 원인은 상당수가 배우자의 무능력과 함께 배우자의 폭력 때문이다.<sup>29)</sup>

- ① 2006년 여성부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922명 중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90.9%, 가정폭력을 당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여성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남편의 폭력적 행동 유형으로는, 폭언이 6.2%, 신체적 폭력이 2.3%로 나타났다.<sup>30)</sup>
- ②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12건의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 사례를 면접 조사한 사례 12건 가운데 성적 폭력, 신체

---

00도서관 중도입국청소년 사례중심으로,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한국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 워크숍자료집, 2012. 6. 22. 75면 이하 참조.

28) 시사포커스 2012년 1월 8일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와 문제점은? 사회적 이슈 불구 교육적 배려 태부족”,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39> 최종방문, 2012년 10월 24일.

29) 다문화가정에 관한 판례 통계는 최봉경, “국제이주여성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2호(2010.6), 138-139면. 서울가정법원 가사 5단독 재판부 2009년 2월 20일에서 2009년 6월 10일 사이 접수된 사건을 보면, 남편의 무능력, 폭행이 소송이유의 19%를 차지한다.

30)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한국사회학회(2006), 106-108면.

적 폭력, 심리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한 양태의 폭력이 존재한다. 이주여성의 남편은 일방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아내에 대한 위협, 무관심과 억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또한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많은 경우 신체에 대한 폭력이 있었고 이주여성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sup>31)</sup>

- ③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1577-1366)의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6년간 총 189,649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한 전체 231,260건 중 가정폭력상담이 18,749건(11.53%), 일반폭력상담이 542건(0.33%), 성폭력상담이 1,143건(0.70%), 성매매상담 186건(0.11%), 부부갈등상담이 27,322건(6.81%), 가족갈등상담이 17,324건(10.66%), 가출상담이 6,812건(4.19%), 외도상담이 1,673건(1.03%), 쉼터상담이 7,225건(4.44%), 이혼관련상담이 16,803건(10.34%)을 차지했다. 상담결과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여성의 수는 1,798명(0.95%)으로 나타났다.<sup>32)</sup> 또한 2012년 1월에서 3월 전체 상담건수 19,555건 중 가정폭력이 1,591건(9.8%), 일반폭력이 62건(0.38%), 성폭력이 72건(0.44%), 부부갈등이 3,126건(19.25%), 가족갈등이 971건(5.98%) 등으로 나타났고, 이혼관련 상담은 2,790건으로 전체의 17.19%를 차지했다.<sup>33)34)</sup>

31) 변화순 외, 전계보고서, 37-67면.

32) [http://www.wm1366.org/dataroom/View.asp?Base\\_ID=32&colz=&txt=&page=&topmenu=dataroom&submenu=01&Contents\\_ID=9118](http://www.wm1366.org/dataroom/View.asp?Base_ID=32&colz=&txt=&page=&topmenu=dataroom&submenu=01&Contents_ID=9118)

3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2012년1-3월간 통계전체보고 인용. [http://www.wm1366.org/dataroom/View.asp?Base\\_ID=32&colz=&txt=&page=&topmenu=dataroom&submenu=01&Contents\\_ID=9466](http://www.wm1366.org/dataroom/View.asp?Base_ID=32&colz=&txt=&page=&topmenu=dataroom&submenu=01&Contents_ID=9466)

34) 2012년 4월 한달간 상담건수도 3,833건으로 가정폭력이 306건(9.34퍼센트), 일반폭력이 11건(0.34퍼센트), 성폭력이 13건(0.4퍼센트), 부부갈등이 669건(20.43퍼센트), 가족갈등이 181건(5.53퍼센트) 등으로 나타났고, 이혼관련 상담은 407건으로 전체의 12.43퍼센트를 차지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중앙) 원간통계전체보고, 2012년4월 인용. [http://www.wm1366.org/dataroom/View.asp?Base\\_ID=32&colz=&txt=&page=&topmenu=dataroom&submenu=01&Contents\\_ID=9500](http://www.wm1366.org/dataroom/View.asp?Base_ID=32&colz=&txt=&page=&topmenu=dataroom&submenu=01&Contents_ID=9500)



결혼이주여성은 특정국가의 언어, 법률, 제도,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이 없고 국민의 성향을 인지하지 못하여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는 “잠재적 반복피해자”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되기 쉬운 대상이다.<sup>35)36)</sup> 또한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비하여 수사절차 등 한국의 상황에 무지하므로 제2차 피해, 제3차 피해를 입기도 쉽다.<sup>37)</sup> 즉, 일반적으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결혼이주여성은 내국인 가정폭력피해여성에 비하여도 보다 범죄피해에 취약한 것이다.

더구나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남성은 주로 우리 사회 내에서 사회 및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소외되고 “주변화”된 경우가 대다수이다.<sup>38)</sup> 따라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은 일반 여성보다도 보다 가정폭력범죄의 대상으로 “피해자화”되기에 쉬운 취약한 대상이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폭력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sup>39)</sup>

## (2)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이미 수많은 문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연구하고 보고된 바 있으며, 수많은 언론에서 조명되어왔다.<sup>40)</sup> 이러한 상황은 1990년 12월 18일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sup>41)</sup>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다.<sup>42)</sup>

35) 양문승 이선영,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자화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 연구 제17권 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188-189면.

36) 정도희, 전계논문, 177면.

37) 양문승 이선영, 전계논문, 201면.

38) 이러한 지적으로 양혜우, “한국의 이주정책과 과제”, 제25회 서울 YMCA포럼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어떻게 볼 것인가>, 2008. 4. 21, 10면 참조.

39) 양문승 · 이선영, 전계논문, 211면.

40) 관련기사로 한겨레 2006년 3월 5일자, “두 다리 잘릴 위기 이주노동자, 바달 미아”

41) 협약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42)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비차별(제2부)을 규정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8년 고용허가제의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고, 2011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절차 마련을 검토할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과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다국어 정보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sup>43)</sup>

### 3. 범죄가해의 문제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 외에 역으로 이주민이 범죄자가 되어 일반 시민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의가 바로 외국인범죄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 혐오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우리사회 외국인 범죄만 보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범죄유형이 폭력, 지능범, 절도이다. 이처럼 외국인의 범죄피해에 이어 범죄가해의 문제도 점차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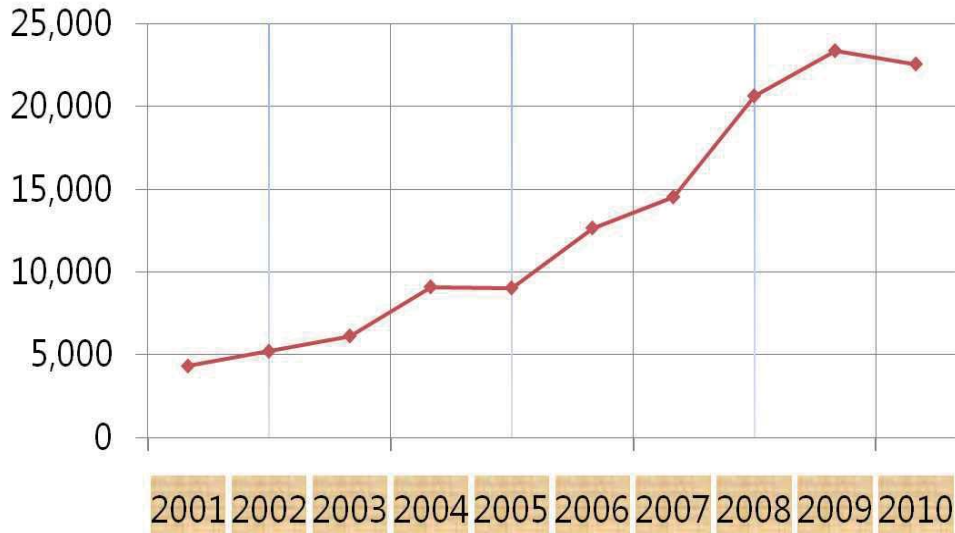
---

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제7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제3부)에 대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을 포함한 어느 국가로부터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또한 이 협약 제3부에서 인정되는 기타의 다른 권리와 양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제8조의1)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더불어 협약에 의하면,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노예상태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제11조 1). 이처럼 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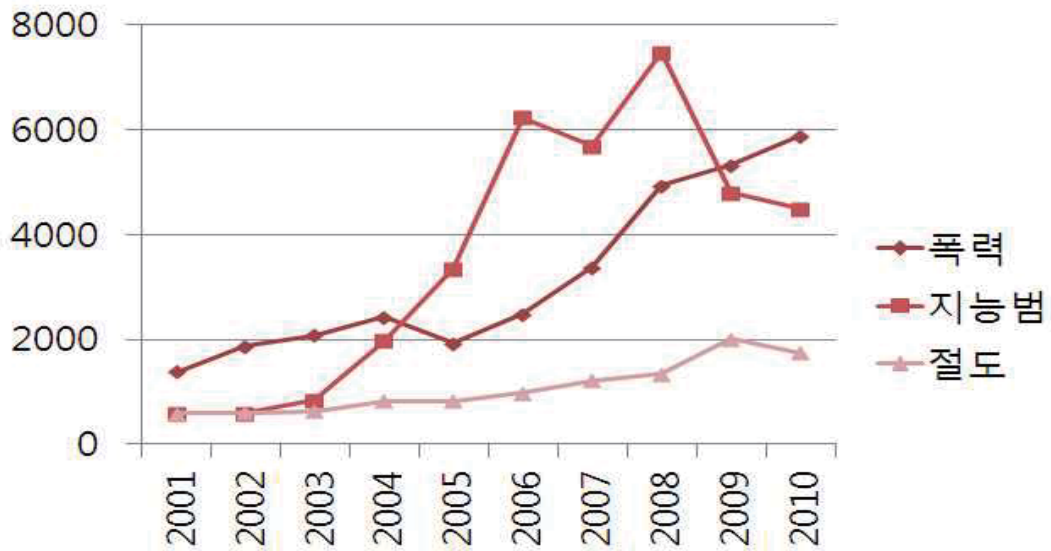
43) 2011년 1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자료, “사업장 내 인권침해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자변경 사유 확대 필요-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인권 증진 위해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참조.



(표3) 최근 10년간 외국인 피의자 수<sup>44)</sup>



(표4) 최근 10년간 외국인 피의자 3대 범죄<sup>45)</sup>



44) 이에 대하여, 정도희,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 예방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개선안, 경찰법연구, 한국경찰법학회 참조.

45) 정도희, 전개논문, 참조.

### 제 3 절 다문화주의와 교육

#### 1.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사회 등장한 것이 바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이다.<sup>46)</sup> 우리나라에 “다문화교육”은 1990년대 “반편견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다문화교육은 좁은 의미로는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을 효율적인 교수 학습과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는 교수 전략”이며, 넓은 의미로는 “학교에서 문화, 다양성,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원하는 교육”이다.<sup>47)</sup> 우리의 상황에서 다문화교육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이며, 새로운 구성원들을 한국 사회에 적합한 시민으로 양성하는 교육”<sup>48)</sup>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만으로 국한될 수 없다. 교육과정의 개정 등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교육의 평등, 여성, 소수민족, 언어적 소수자, 저소득층, 장애인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교 개혁운동의 하나이자, 시민교육의 하나이다.<sup>49)</sup>

요컨대 다문화교육은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유도하여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삶을 긍정적으로

---

46) 서종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제15-2호, 2009, 81면 참조.

47) 미국 다문화교육학회(NAME)는 다문화교육을 “자유, 정의, 평등, 공평과 인간존엄성의 이상 위에 건설된 철학적 개념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취감의 최고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학교, 정책과 기구의 모든 요소들에 스며든 과정”으로 정의한다. 미국다문화교육협회 홈페이지(<http://nameorg.org>) 참조. 김정호, 다문화 시대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 방법 모색, 글로벌교육연구 제2집 제2호, 2010, 44면 인용.

48) 김용신, 글로벌 시대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제49권 제1호, 48면.

49)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자 핵심은 소수집단이 가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이다. 김용신, 글로벌 시대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제49권 제1호, 50면.

변화시킴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생활하고 의사소통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준비하는 시민 전체에 대한 교육”으로 정리할 수 있다.<sup>50)</sup>

## 2. 다문화 교육의 목표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민주적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다원주의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Banks는 규범, 가치, 교육과정, 학생그룹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제도화된 구조 속에 다원주의 사회의 성, 인종, 문화적 다양성을 가정한 철학적 입장(Position)과 태도(Movement)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51)</sup> 그는 다문화교육의 목표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sup>52)</sup> 다문화교육의 목표 설정에 대해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sup>53)</sup>

- ① 타문화 타인종의 관점에서 자신의 문화를 봄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Self-understanding)할 것
- ② 문화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식할 것
- ③ 교차-문화(Cross-cultural)적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
- ④ 다문화교육은 아동의 학습능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

50) 오승아 외 3인, 세계문화이해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제13권 제2호, 148-149면.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오승아 외 3인의 글에 인용된 김영옥, 다문화 사회의 유아교육과정 방향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3호, 2007의 정의를 변형 인용함.

51) Richard Race,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Continuum, 2010, pp.3-4.

52) James Banks,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Addison-Wesley, 2007 참조.

53) James A. Banks, An Instr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 Pearson Education, Inc, 2008 참조.

다문화교육의 목적, 목표는 다양한 학자들이 설정하였다. Bennett는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모든 학생이 지적, 사회적,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고,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을 강조하기도 했다.<sup>54)</sup>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 ① Bruth and Manning :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술, 태도 습득을 강조한다.
- ② Miller-La chman and Taylor : 교육을 통한 공정한 사회 형성 및 다양한 집단의 표현을 돕는다.
- ③ Sleeter and Grant : 교육의 평등을 강조한다.
- ④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1994) : 문화간, 국가간, 집단간, 개인간 친밀과 이해 증진과 포용력 및 이해심 배양을 강조한다.

### 3. 다문화교육의 방향

통상 “다문화교육=다문화가정자녀인 학생교육”이라는 것이 다문화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념이다. 앞서 상술했지만 이것은 단지 좁은 의미의 다문화교육만을 다문화교육으로 착각하는 탓이다. 물론 다문화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언어와 문화교육이다. 다만 학생에 대한 교육만을 다문화교육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을 탈피해서 전체 시민교육으로 이해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이해와 의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인식과, 인종이나 피부색이 다르더

---

54) 미국의 다문화교육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신념에 기초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서종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제15-2호, 2009, 79면.

라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왔을 뿐 동등하다는 인식과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상호 다양성과 유사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특성과 의외의 유사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교육은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sup>55)</sup>

요컨대 다문화교육은 소수민족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이나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사회 구성원 “상호이해와 의존”, “상호 다양성과 유사점”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sup>56)</sup>

---

55) 정대현,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지도 방법, 7-14면 참조.

56) 특히 다문화 학생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과 차별의 해소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모경환,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2007, 13면.

## 제 3 장 다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제 1 절 한국 사회 다문화 교육 현황 및 정책

#### 1. 다문화학생 현황과 교육

##### (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받을 권리

다문화가정은 생성 배경에 따라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로 구분된다.

우선 국제결혼가정자녀는 출생지에 따라 한국출생자녀와 중도입국자녀로 구분된다. 국내출생자녀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국적법 제2조 제1항<sup>57)</sup>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한 자녀 등을 말하며,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라는 형식을 통하여 한국 국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들 중 약 90% 이상이 중국인, 조선족이며,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10대 중, 후반인 중, 고등학생 때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

57)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또한 외국인가정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하며, 헌법 제6조 제2항<sup>58)</sup> 및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진다.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sup>59)</sup>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 (2) 다문화학생 재학 현황 및 향후 예상

### 1) 다문화학생 재학 현황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12년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수는 46,95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학교 재학생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초등학생이 33,792명(72%), 중학생이 20.5%(9647명), 고등학생이 3,515명(7.5%)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에서 2011년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녀가 성

58) 헌법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59) 2012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또는 학생”을 입학 및 전학 절차 간소화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생략)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관해서는 귀국학생 등의 초등학교 입학 등에 관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장함에 따라 상위 학급의 재학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기준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38,678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55%를 차지하였다. 이 중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출생자녀가 33,999명, 중도입국자녀가 3,540명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하였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2,139명으로 전체의 5.5%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이 전체의 74.1%, 중학생이 19.7%, 고등학생이 6.2%를 차지하여, 초등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서울, 경기도가 높게 나타났다.<sup>60)</sup>

(표) 2011년 12월 지역별 다문화학생 지역별 현황<sup>61)</sup>

지역 \ 학교급	초등	중등	고등	소계
서울	4,282	1,130	392	5,804
경기	6,209	1,581	661	8,451
강원	1,534	477	119	2,130
(중략)				
충남	1,859	556	173	2,588
전북	1,982	551	126	2,659
전남	2,432	652	142	3,226
경북	1,835	436	75	2,346
경남	1,867	507	163	2,537
합계	28,667	7,634	2,377	38,678

6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61)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도 다문화학생 현황(‘11.12월 기준)” 통계 현황 표를 편집하여 인용하였음.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표) 2009년 이주민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 비율<sup>62)</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재학생 수	21,466명	3,294명	1,255명	26,015명
학업중단자 수 (비율)	114명(0.53%)	84명(2.5%)	25명(2.0%)	223명(0.85%)

## 2) 향후 추이 예상

한국의 초, 중, 고 학령인구는 연평균 약22만명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학생의 수는 연평균 약6천명 증가하고 있다. 만5세 이하 외국인 주민 자녀가 모두 취학할 경우 2014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전체 초, 중, 고등학생의 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sup>63)</sup>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중은 2007년 0.19%, 2009년 0.35%, 2011년 0.55%이었으며, 향후 2013년 0.87%, 2014년 1.12%로 예상된다.<sup>64)</sup>

## 2.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

현재 우리사회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이 주로 중심에 있는데, 교육정책 또한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가정은 물론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도 증가하고 있다.<sup>65)</sup> 중도입국자녀가 학교, 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하여 현재 정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개별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 등 한국어 지

62) 이정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121면의 표를 편집하여 인용함.

63) 2011년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자녀 통계에 따르면, 만0세가 16,428명, 만1세가 17,304명, 만2세가 16,607명, 만3세가 15,584명, 만4세가 10,775명, 만5세가 8,844명으로 집계되었다.

64)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인용.

65) 이에 대하여 박봉수, 전계논문, 77면 이하 참조.

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하여 한국어,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강사, 대학생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1) 기존 정책 및 실제 사례

1)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 정책

①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교육정책

교육과학기술부(전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표) 2006-2010년 다문화교육정책<sup>66)</sup>

2006년 5월	<p><b>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발표</b></p> <p>-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li> <li>②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li> <li>③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li> <li>④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li> <li>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li> <li>⑥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li> <li>⑦ 정책대상별 고유과제</li> </ul>
2007년 5월	<p><b>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계획 발표</b></p> <p>- 사업 내용을 학교 중심의 다문화교육 강화로 정하고 추진, 지원 체제를 다각적 협력과 전문성 제고로 설정함</p>
2008년 10월	<p><b>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 발표</b></p> <p>- 지원방안으로 다음의 4대 정책과제와 14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함</p>

66)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123-125면의 내용을 요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 기초학력 향상 지원</li> <li>②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li> <li>③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li> <li>④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li> </ul>
2009년 7월	<p><b>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계획 발표</b></p> <p>- 추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li> <li>②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li> <li>③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li> </ul>
2010년 5월	<p><b>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b></p> <p>-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함</p> <p>- 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습단계별,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li> <li>② 유아, 동반 중도입국 자녀 등 취약 분야 교육 지원 확대</li> <li>③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지역 내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li> <li>④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활성화</li> </ul> <p>- 세부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li> <li>②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li> <li>③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활용</li> <li>④ 다문화가정 유아교육 지원</li> <li>⑤ 동반, 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li> <li>⑥ 다문화교육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li> </ul>

② 서울시 다문화교육정책

다문화정책현황을 시도교육청별로 분석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총 7개의 다문화교육정책을 계획,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및 방과후학교 지원”,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지원”, “한국문화체험캠프 개설, 운영”,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배치, 운영(초등)”, “다문화가정 교육 장학자료 발간, 보급(중등)”,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생 추천-두산연강재단”<sup>67)</sup>으로, 각각의 정책에는 하위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도 한다.

(표) 2010년 서울시 다문화교육사업 성과 분석<sup>68)</sup>

ㄱ)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 정책 ·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실시 ·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가정 학생 방과후 교육을 내용으로 함
ㄴ)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 지원 정책 ·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실시 ·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귀국자 특별학급 운영지원비를 교부하여 귀국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됨
ㄷ) 한국문화 체험캠프 개설, 운영 정책 · 2010년 7월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귀국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 2박 3일의 일정으로 실시됨
ㄹ)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정책 · 2010년 10월 9일 서울 충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음 · 다문화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어울마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
ㅁ)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배치, 운영 정책 ·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중언어 교수요원 63명이 각 학교에 배치되었음

67)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2010 참조.

68)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별 다문화교육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2010, 28-36면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선발, 교육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우선배정한 사업으로 2009년 이중언어강사 연수에 이어 추진 된 사업</li> </ul>
<p>ㄴ) 다문화가정 교육 장학자료 발간 및 보급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진행되었음</li> <li>·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용 지도 자료 개발</li> </ul>
<p>ㄷ) 다문화가정 학생 장학생 추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저소득층 학생 80명을 선정하여 1인당 120만원씩 총 96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음</li> </ul>

##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sup>69)</sup>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정 특수성을 고려한 보충적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2011년 사업비 예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69)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 1 조(목적) 이 훈령은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

2.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이 된다.

(표6) 다문화가족 자녀관련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sup>70)</sup>

구 분	사업명	2011예산	비고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강화	다문화가족학생 교육지원	7,300	교과부
	- 다문화거점학교 지원	800	교과부(특교)
	- 멘토링	5,000	국고
	- 다문화캠프	3,00	교과부(특교)
	- 글로벌 인재양성	650	교과부(특교)
	- 이중언어 교육활성화	650	교과부(특교)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교실운영	1,202	여성가족부
	다문화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11,600	복지부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다문화가족 유아교육지원	200	교과부(특교)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한국어 방문학습자료 개발	750	문화부 (여성발전기금)
	다문화 언어지도사 배치확대	4,41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독서진흥 콘텐츠 개발	500	문화부
다문화가족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학부모 지원(일반학부모와 1:1결연 등)	280	교과부(특교)
	자녀생활서비스 시범사업 (학교알림장, 읽기, 준비물 챙기기 등 학교생활 적응 지도)	7,692	여성가족부
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문화청소년지역센터 운영	141	여성가족부
	동반·중도입국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300	여성가족부
	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320	교과부(특교)

70)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검토보고, 2011.6. 인용

### 3) 다문화교육 실제 사례 분석

#### ① 학교교육 사례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인 7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다.<sup>71)</sup> 다문화 연구학교의 교육과정은 문화, 다양성, 정체성, 반(反)편견, 차이, 협력, 평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고 있으며, 그 소재는 다양한 민족의 전통문화, 민속, 생활도구 등이다.

(표5)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교육 내용 및 학습활동<sup>72)</sup>

연구학교	내용선정		학습활동	
	소재	주요개념	교과활동	특별활동
B 초등학교	민족예절, 음식, 민속의상 등	반 편견, 문화, 정체성, 평등성, 다양성, 협력	역할놀이, 편지쓰기, 글짓기, 그리기	다문화교실, 지역문화 체험활동 등
C 초등학교	세계민담, 사진, 민요, 국가 상징물, 전통문양 등	평등한 인권, 화해와 협력, 다양한 문화, 올바른 정체성	이야기, 음악극, 가면극, 프로젝트학습	다문화의 날, 무지개가족결연 등
E 초등학교	인사, 피부색, 문화 비교지도, 의상, 음식 등	문화, 다양성, 협력, 반 편견, 평등성, 정체성	독후감쓰기, 글짓기, 그림그리기	다문화체험마당, 다문화축제 등

71) 박선웅 외, 다문화교육 연구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분석, 시민교육연구, 29-60면; 자세한 내용은 오영훈, 통합적 다문화교육의 실제와 모색, 2012년 6월 22일 한국법제연구원 다문화교육글로벌법제화방안 워크숍 자료집, 53면 이하 참조.

72) 오영훈, 전개논문, 53면의 표를 편집하여 인용함.

② 시민단체 교육 사례

현재 시민단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직업개발교육, 한국문화교육, 문화이해교육, 정체성교육, 인권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73)</sup>

(표6) 시민단체 교육프로그램<sup>74)</sup>

구분	
프로그램 내용	① 한국어교육 - 초·중·고급반 교육
	② 직업개발교육 - 컴퓨터, 이·미용, 제과·제빵, 원어민 언어 강사 양성 등
	③ 한국문화교육 - 태권도, 한국음식 등
	④ 문화이해교육 - 다양한 문화행사
	⑤ 정체성교육 - 상담을 통한 소수 집단의 정체성 형성
	⑥ 인권교육 - 권한강화 (일반 인권 및 권한 강화 훈련) - 차별예방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 훈련)
	⑦ 법률, 의료, 안전, 금융, 영양교육 및 쉼터 운영

73) 자세한 내용은 오영훈, 전계논문, 56면 이하 참조.

74) 오영훈, 전계논문, 57면의 표를 인용함.



### ③ 종교단체 및 이주민 단체 교육 사례

시민단체와 종교, 이주민단체를 구분해서 보면, 종교, 이주민단체에서도 모두 기본적인 언어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교육은 이주노동자, 이주민자녀,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한국문화, 문화이해, 정체성, 인권 교육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직업교육은 일부 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로 컴퓨터, 이미용, 제과제빵, 원어민 강사 양성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상담도 진행되고 있고, 법률교육, 법제도 개선운동과 같이 인권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다양하다. 또한 이주민 교육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단체의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한국문화, 문화이해, 정체성, 인권 교육이 주요 프로그램이다.<sup>75)</sup>

## (2) 2012년 및 향후 정책

### 1) 다문화학생교육 선진화 방안

2012년 3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추진을 발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연도별 다문화학생이 2007년 14,654명, 2009년 26,015명, 2011년 38,678명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특징이 다양화되어 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75) 오영훈, 전계논문, 58-60면 참조.

(표)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sup>76)</sup>

<p><b>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다문화가정 자녀(특히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희망하면 예비학교에서 반년 정도 한국어, 한국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규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예비학교는 2011년 기준 서울, 부산, 광주에 3개교가 있다.</li><li>·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시부터 입학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청에도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있어 입학상담에서 학교 배치와 사후 관리까지 입학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sup>77)</sup></li></ul>
<p><b>②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ary Language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이 도입 및 기초학력의 책임 지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강화를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한국어 표준교재와 진단도구인 학생용 TOPIK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한다.</li><li>· 다문화가정 자녀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도하기 위한 대학생 1:1멘토링의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다문화학생을 위하여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하여 기초 예절, 한국문화부터 학교생활 적응까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li></ul>

76)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인용.

77) 다문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발굴하여 학교에 입학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p><b>③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육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이중언어 학습기회를 부여하고 다문화학생의 강점을 살리기 위하여 각국의 문화, 역사 이해 중심의 방과후 학교, 방학, 주말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를 단계적으로 양성하여 2015년까지 1,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중언어 교육의 지속적인 질 제고를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에 심화연수 과정을 도입하고, 해외 초청 교원을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여 인력 풀을 다양화한다. 이중언어 교재는 수준별로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소수 언어를 우선 개발하고 EBS 방송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 보급된다.</li> </ul>
<p><b>④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 및 진학 지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학년부터 서울, 충북 지역에 직업 교육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운영되고 2013년부터는 인천 지역에 추가로 운영된다.</li> <li>·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우수 다문화학생을 4개 분야 300명씩 육성한다.<sup>78)</sup></li> </ul>
<p><b>⑤ 다문화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친화적 지원 체계가 우수한 학교 150개교를 글로벌 선도학교로 집중 지원하여 지역 내 다문화 교육의 중심학교로 육성한다. 글로벌 선도학교는 인근 지역 다문화학생을 지원하는 기존 거점형 학교 120개교를 포함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타 학교로 전파하는 집중 지원형 30개교를 운영한다. 또한 교원 양성단계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문화학생이 직접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대 다문화 특별전형 확대한다.<sup>79)</sup></li> </ul>

78) 2011년 2개 분야, 4개 대학(서울교대, 카이스트, 경남대(수학 과학), 광주교대(리더십))였던 것을 2012년 4개 분야(수학 과학, 리더십 + 언어, 예체능 등 추가), 7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79) 2012년 5명을 2013년 2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예비교원을 위한 교대, 사대 다문화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 연수도 체계화되어 교사의 다문화 교육역량이 강화된다.

**⑥ 일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 다문화가정 자녀 뿐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이해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고 글로벌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학부모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16개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일반가정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일반가정 학부모와의 교류도 활성화된다.

**2)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2012년 4월 18일 정부는 제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10~'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이는 2012년도에는 한국 거주기간이 점차 길어지는데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과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역량 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총 53개 과제, 총 925억 원 예산 투입 추진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시행계획에 따라 2012년 정부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012년 시행계획  
정부 주요사업 및 세부 과제<sup>80)</sup>

<p>① 다솜학교 설치 및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정 자녀 중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일반 교과과정, 직업훈련 등을 교육</li> </ul> <p>② 멘토링 시스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대학생을 연계하는 학습상담 지원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li> <li>· 농어촌 학생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li> </ul> <p>③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자녀 생활서비스” 확대</p>
<p><b>세부 과제</b></p>
<p>①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제안</p> <p>ㄱ)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초등학교 80개소였던 “글로벌 선도학교”를 2012년 초, 중, 고등학교 150개소로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교과학습 지도</li> <li>·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정규과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국어 교육과정(KSL) 신설</li> <li>· 결혼이민자 자녀 중 정규학교를 중도탈락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 일반교과과정,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솜학교” 설치<sup>81)</sup></li> <li>·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자녀를 위하여 2011년 3개교였던 예비학교를 12년 26개교로 확대<sup>82)</sup></li> </ul>

80) 2012년 4월 17일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인용.

81) 2012년 3월 충북제천에 한국폴리텍 다솜학교, 서울다솜학교가 개교하였고 2013년 인천에 추가로 개교할 예정임을 밝힘.

82) 2011년 600명이었던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을 2012년 8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힘.

<p>ㄴ)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상담부터 학교 배치, 사후관리까지 입학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다문화화코디네이터” 운영</li> <li>· 다문화가족 자녀와 대학생간 연계를 통해 학습, 상담을 지원하는 멘토링 대상을 2011년 초, 중학생에서 2012년 고등학생까지 확대</li> <li>· 농어촌 학생을 위하여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 도입</li> <li>· 생애주기별 양육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서비스”를 2011년 80개소 528명 배치되었던 것을 2012년 200개소 1,300명 배치로 확대</li> <li>·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이중언어강사 양성 확대<sup>83)</sup></li> </ul>
<p>②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를 위한 과제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국민 및 다문화가족, 다문화 시설 종사자, 공무원, 청소년 등 대상별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li> <li>· 대상별 5개 권역 교육을 실시하고, 17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교육원, 다문화 관련 58개 과정 개설</li> <li>·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시도 교육청 다문화화교원 연수 실시<sup>84)</sup></li> </ul>
<p>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 케이블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광고 확대를 통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확산</li> <li>·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 확대</li> <li>· 지역 우수 다문화 프로그램 50개를 발굴, 지원하고, 2011년 11개 시도에서 실시하였던 다문화가정어울림생활체육축제를 2012년 16개 시도에서 실시</li> <li>· 일반 및 이주배경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통합캠프 실시</li> </ul>

83) 이중언어강사는 2011년 120명이었는데, 2012년 240명 양성을 제안함.

84) 연수는 2011년 2,093명이었던 것을 2012년 4,000명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함.

### 3)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정부는 상술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 조사 결과 다문화 인식 대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자, 2012년 8월 17일 제124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다양한 인종 문화와 함께 사회문화 조성”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4개의 추진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 4대 추진 과제<sup>85)</sup>

<p><b>①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 및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내용을 반영하여 개발, 보급(2013년 이후)</li> <li>· 다문화학생의 학적 관리, 생활지도,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3종) 제작, 배포(2012년)</li> </ul>
<p><b>②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증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교안 및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과정 체계화(2012년 이후)</li> <li>· 기존에 개발된 교재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활용도 제고 및 다문화 관련 차별적 요소 시정(2013년)</li> <li>· 문화기반시설 종사자, 문화분야 전문인력, 교사 등 교육 매개자 및 언론, 기업, 정책영역 등 핵심인력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2012년)</li> <li>· 타 문화 존중 및 이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문화예술, 방송, 영상, 미디어 분야의 콘텐츠 제작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2012년)</li> <li>·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한 방송 및 문화콘텐츠 제작, 보급 지속 지원</li> </ul>

85) 2012년 8월 17일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1-6면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 라디오, 인터넷 등 다문화, 인종에 대한 차별적 표현 모니터링 강화 및 조치(2012년)</li> <li>· 일반 시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및 표현에 대한 자정능력 제고(2013년)</li> </ul>
<p><b>③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포용력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민의 자생적 문화프로그램 발굴 지원(2013년)</li> <li>· 관련 행사에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를 위한 매뉴얼 개발(2013년)</li> <li>· ‘세계인의 날(5.20)’ 기념행사의 보완, 확대, 발전 방안 마련 추진(2013년)</li> <li>· 지역사회 시민과 다문화가족의 1:1 연결 프로그램 개발</li> <li>· 문화기반시설 내 우수다문화(문화다양성)프로그램 발굴, 개발, 보급 확대(2012년)</li> <li>· 이주민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이주민과 일반국민 간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2012년)</li> <li>· 다문화가족 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2012년)</li> </ul>
<p><b>④ 준법환경 강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법률, 문화, 국내, 체류정보 등에 관한 법질서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내 적응 지원</li> <li>· 외국인주민의 밀집지역 환경개선 추진(2012년), 부정적 인식 불식</li> <li>· (가칭)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2012년 이후)</li> <li>·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2년)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관련법 개정 검토(2013년 이후) 등을 통해 다문화사회의 기초가 되는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조항 마련</li> <li>· 표현(창작)물에 대한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규정 분석 및 검토를 통해 표현(창작)물에 의한 피해사례 발생 방지(2012년)</li> <li>· 다문화 관련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 및 관리 강화</li> </ul>



이과 같은 정부 대책은 표의 내용과 같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대한민국 법률과 문화에 대한 법질서 교육 지원이 계획되어 있어, 다문화교육을 이전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 제 2 절 현행 다문화교육의 문제 상황

다문화사회인 한국사회는 이미 OECD가 다문화사회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혼돈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민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정책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정책은 실행 전담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여러 부처에서 중복 시행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 (1)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도 시행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전문가가 부족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 또한 주관 부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문화교육은 그 내용이 단조롭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참가 대상도 제한적이다.<sup>86)</sup>
- (2) 다문화교육이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협소하며, 다문화가정 지원정책도 대부분이 영유아기와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경우가 많다.<sup>87)</sup>

---

86)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106면 참고.

87) 이러한 지적으로 안경식 외,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2008, 57-60면.

(3) 현행 교육 정책은 이주민을 교육이라는 권리의 주체가 아닌 국가에 의해 일방적인 시혜를 입는 대상, 객체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교육 대상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다.

(4) 다문화교육정책의 근거 법률의 부재이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대한 개선해나가면서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 4 장 글로벌 다문화교육방안 및 법제화

### 제 1 절 다문화교육관련 법제

교육은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지식을 얻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통합의 전제가 되는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고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와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출신국이 저마다 다른 이주민들의 상이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 현행법도 이주민의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다문화관련 법제를 검토한다.

#### 1. 헌 법

교육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제31조 제1항 및 제3항).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국내출생자녀는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기 때문에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중도입국자녀는 국내 입국 시 외국 국적이나 특별귀화라는 형식을 통하여 한국 국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이다.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제6조). 따라서 외국인가정자녀는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하게 교육권을 가진다.

## 2. 현행 교육기본법

현행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2항). 즉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제29조 제1항),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항)고 하여, “국제교육”을 교육기본법상 명문화하고 있다.

## 3.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어교육이나 사회적응 교육을 이민가정에 실시하도록 하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한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교육을 아동교육에 한정시키지 않고,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교육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할 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이 같은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에게 인정되는 교육권은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교육권이 달라서는 안되며,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민에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즉, 우리 사회 편입 여부와 관련 없이 자녀에게는 교육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sup>88)</sup>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에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초, 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2012년 개정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초·중학교에 다문화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학 절차 간소화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또는 학생’을 포함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75조<sup>89)</sup>).

88) 전광석, 다문화 사회와 사회적 기본권 - 헌법적 접근을 위한 시론 -, 제58회 학술대회 <다문화 사회와 헌법>, 2010. 3. 20. 157-158면.

89)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 전학 및 편입학)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 전학 및 편입학에 관해서는 귀국학생 등의 초등학교 입학 등에 관한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는 “중학교”로, “제17조 및 제21조”는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으로 본다.

- ②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에 “이중언어강사”를 추가하고, 임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임용가능하도록 하며, “이중언어강사”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다(제42조 제1항 및 제4항,<sup>90)</sup> 별표2<sup>91)</sup>).
- ③ 다문화 가족 아동 등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98조의2, 제98조의3).

## 5. 기타 법안

기존의 발의되었던 다문화교육 관련 의미 있는 법안으로는 다음이 있다.

### ① 2007년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결혼이주민 가정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의무화를 강조한다.<sup>92)93)</sup>

---

90)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91)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제42조 제1항 관련]

92) 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 거주하다가 국내에서의 근로·생활·군복무·교육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거나 귀화·혼인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이주민가족”이라 함은 가족(「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의 구성원에 이주민이 포함되거나 부 또는 모를 이주민으로 하여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말한다.
3. “이주민근로자”라 함은 이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결혼이주민”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으로 결합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를 말한다.
5. “각급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3) 고경희 의원 등 24인,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6206호), 2007.3.8.

② 2006년 및 2008년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6년과 2008년 총 세 차례 발의 되었으며, 그 중 2008년 발의안을 보면 혼혈인 가족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각 급 학교에서 차별배제와 편견 예방 교육을 강조한다.<sup>94)95)</sup>

(표) 2007년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및 2008년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다문화교육 관련 조문 비교

2007년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p>안 제 9 조(상담,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및 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의 입국 시 사회조기적응을 위한 상담, 체류과정에서의 문제에 관한 상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환상담 등 체류주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거</p>	<p>안 제 5 조(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의 책무)</p> <p>①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는 이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관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 등을 조사·시정하여야 한다.</p> <p>②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혼혈인인 학생 및 그 가족의</p>

94) 안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혼혈인”이란 3촌 이내의 직계혈족 중 인종 또는 종족이 다른 자가 있는 자로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혼혈인가족”이란 가족(「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에 혼혈인을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3. “사회적 배제·편견”이란 법적·제도적 차별 행위 외에 혼혈인가족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심신의 장애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조직적인 일체의 언어적 및 물리적 행위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5.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95) 김충환 의원 등 12인,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2008.10.9 발의)



2007년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p>나 상담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이 원하는 경우 국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주민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또는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안 제12조(이주민자녀에 대한 교육지원)</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편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자녀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p>	<p>신청이 있을 때에는 혼혈인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p> <p>안 제 7 조(예방교육)</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혼혈인가족에 대한 법적·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배제·편견의 예방과 그 시정을 위하여 그 소속 직원 및 학생에게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장</li> <li>2. 각급 학교의 장</li> <li>3. 그 밖에 공공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007년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008년 혼혈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p>주민가족의 자녀가 보육시설과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 거주확인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하여 보육시설과 각급 학교의 장은 이주민가족의 자녀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가족의 자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보육시설,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교육과 통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조기에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④ 각급 학교의 장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후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각급 학교의 장은 이주민가족의 자녀인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이주민가족의 자녀가 조기에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 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정체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 제 2 절 다문화정책과 교육관련 외국 정책 및 법제

### 1. 캐나다

다문화정책을 선언한 캐나다의 관련 법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sup>96)</sup>

#### (1)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중요한 권리 및 자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 제16조 및 제22조 : 영어와 프랑스어가 캐나다 공식 언어임을 명시, 모든 연방 기관들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두 언어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명시한다.
- 제23조 : 소수 언어 교육권을 규정한다.

#### (2) 1977년 캐나다 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

- 모든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
- 연방과 사법 재판에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한다.
- 인종과 국가, 민족적 근원과 피부색과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다.

#### (3) 1988년 7월 다문화주의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 인종적 문화적 평등의 원칙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다.

---

96) 배진아,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캐나다편-,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30, 80-87면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4) 1991년 1월 캐나다 유산 언어 기관 법  
(Canadian Heritage Languages Institute Act)

- 캐나다 유산언어 기관의 목표를 명시한다(제4조).
- 교사 양성 교육과 캐나다의 민족 소수 언어 교실의 커리큘럼 내용을 위한 국가적 기준 발달을 목적으로 유산 언어 담당 기관 설립을 명시한다.

(5) 1991년 캐나다 인종 관계 재단 법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Act)

- 공공 교육을 통해 인종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해 토론토에 인종 관계 재단 설립을 규정한다.

## 2. 프랑스

프랑스의 법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특히 여러 부문에서도 언어 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sup>97)</sup>

(1) 2006년 이민과 사회통합에 관한 법안  
(Project de la relatif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 신규 이민자들은 이주신고시 프랑스 정부와 “유입통합계약”(Contrats d'accueil et d'intégration)을 체결하도록 한다. 이 계약에 의하면 신규이주민은 프랑스어 능력 배양과정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97) 고종환,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프랑스편-, 한국법제연구원, 2010. 10. 30. 95-124면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2) 2007년 이민, 통제, 동화 그리고 망명에 관한 법률  
(loi du 20 November 2007 relative à la maîtrise de  
mmigration, à l'immigration, à l'intégration et l'asile)

- 2006년 이민법에 비해 가족재결합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불법체류자의 보호유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불법체류를 억제하는 등 불법이민 통제 조치를 규정하였다.

(3) 언어 관련 법안

① 1885년 쥘 펠리 법안(loi Jules Ferry)

프랑스 초등교육을 의무화하였다.

② 1975년 바 로리올 법안(loi Bas-Lauriol)

프랑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사업, 노동, 고용 부문에서 영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③ 1994년 프랑스어 사용 의무화 법안(loi Toubon)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영어 사용이 금지되고, 공공문서는 물론이고 광고나 간판에서도 영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였다.

### 3. 스페인

(1) 헌 법

스페인에서 외국인에 대한 교육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민자들을 수용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에 특히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교육

시스템은 외국인들의 사회적 학문적 통합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들을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했다.<sup>98)</sup>

스페인에서 현행 「헌법」 27개 조항은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1978년 스페인 헌법(SC)은 “헌법이 인식하는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협정 그리고 스페인이 비준한 동일한 주제의 국제 조약에 따라 해석됨을 명백하게 밝힌다(제10조). 스페인 헌법 제27.1조에 명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육권을 가진다”와 “교육의 자유가 인정된다”라고 규정한다. 덧붙여, 스페인 헌법 제13.1조는 스페인에 의해 서약된 법과 협정에 따라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공공의 헌법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 (2) 교육 관련 법

스페인에서는 상술한 헌법을 근거로, 1978년 이후 교육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어 왔으며, 외국인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법률 또한 제정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의 교육권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1978년 교육 중심 현장 규정 법률(*Law Regulating the Charter of Educational Centers*)(*Ley Orgánica que regula el Estatuto de Centros Docentes-LOECE*)

- 스페인 거주 외국인은 스페인 시민과 동일한 조건의 자유로운 기초 및 전문 교육, 그리고 더 상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 3 조).

98) 스페인의 다문화교육(혹은 상호문화교육)에 대하여 F.Javier Garcia Castano, Antonio Granados Martinez, Maria Garcia Cano Torrico, De la Educacion Multicultural E Intercultural a la Lengua y Cultura de Origen : Reflecciones sobre el Caso Espanol, Laboratorio de Estudios Interculturales, Universidad de Granada, <http://www.ugr.es/~Idei/Miembros/Componentes/Garcia/Publicaciones/CapitulosLibros/CL-99-23.rtf> 참조. Proyecto Lengua de acogida, lengua de origen desde una perspectiva intercultural (LALO). Programa Socrates /Comenius Accion 2

2) 1985년 3월 교육법(*Law 8/1985, of July 3, Regulating the Right to Education*)(*Ley Orgánica Reguladora del Derecho a la Educación - LODE*)

- 거주 외국인의 교육권을 규정한다.
- “모든 스페인 시민은 그들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킬 것을 허용하는 기본적인 교육권을 가지며 사회에 유용한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교육은 기본 일반 교육 수준에서 의무이자 무료이며, 전문 훈련 과정의 1학년 수준의 교육 뿐 아니라 법이 제정한 다른 수준의 교육까지 이를 것이다(제 1 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의 기술과 재능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실행이 학생들의 경제적 수단, 사회적 지위 또는 거주 지역에 근거한 차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제 2 조).
- “스페인 거주 외국인들은 이 조항의 1항과 2항에서 언급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 3 조).

3) 이민법

① “스페인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1985년 7월 1일의 법률 7”(Law 7/1985, of July 1, Concern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ers in Spain)

- 합법적으로 스페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교육권을 인정한다.

② 스페인에 있는 외국인들의 권리와 자유 및 사회통합에 관한 2000년 1월 11일의 법률 4(Law 4/2000, of January 11, Concerning the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ers in Spain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 외국인의 교육권을 확대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 “18세 이하의 모든 외국인들은 스페인 시민과 동일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와 다음을 포함하는 권리를 가진다 : 기초, 무료,

의무 교육에의 접근권, 상응하는 학력 취득, 공공 재정 보조 시스템에의 접근권”(제9 조 제1항)을 인정한다.<sup>99)</sup>

- “외국인 거주자들은 스페인 시민과 동일한 조건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경우에 상응하는 학위를 취득하거나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한 공공 제도에 접근하기 위해, …(중략)…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9 조 제3항)고 규정한다.
- “정부 당국은 필요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면서, 더 나은 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제9 조 제4항)”고 규정한다. 외국인의 교육권의 보장 뿐 아니라, 외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접근권을 규정한다.<sup>100)</sup>

### (3) 정 책

- 현재 스페인 교육부는 “통합교육”을 위한 현행 수단으로 “강화, 지도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Programas de Refuerzo, Orientación y Apoyo, or PROA)”를 실시하고 있다.
- 교육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위한 자원 센터(Centro de Recursos para la Atención a la Diversidad Cultural en Educación, or CREADE)가 운영된다.<sup>101)</sup>

---

99) 제9조에서 생긴 문제들 중 하나는 18세 이하의 비 거주 외국인이 스페인 시민들과 동등한 의무교육 이후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Sentencia del Tribunal Constitucional - STC 236/2007, of November 7, 2007)는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100) 현재 LGE나 LOGSE는 둘 다 폐지되었고, 유효한 법은 2006년 5월 3일의 교육법 (Ley Orgánica de Educación, or LOE)이다.

101) María Ángeles Sotés-Elizalde, Human rights and Immigration: The Right of Education of Foreigners in Spain,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 2010, pp.2808-2811.

## 4. 그리스

### (1) 그리스의 다문화 현황

그리스에서는 이주민과 함께 본국 송환자의 비중이 높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진학하는 학생 수를 보면, 송환 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수는 그리스 학생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이는 송환학생과 외국인 학생의 학업의 ‘중도 포기’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는 이주민 뿐 아니라 그리스 본국으로 송환되어온 자들까지 다문화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제3차 교육(대학 교육 및 직업 교육)에 참여하는 송환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수는 그리스 학생의 수에 비해 매우 적다.

(표10) 1999-2000년 그리스 각급 학교 학생 분포<sup>102)</sup>

학년	송환 학생	외국인	그리스인 학생
유치원	1,530	5,882	142,559
초등학교	17,918	40,653	377,400
중학교	8,693	13,373	136,933
고등학교	2,499	3,102	393,201
총 수	30,640	63,010	1,050,093

자료: I.P.O.D.E(1999-2000)

### (2) 다문화 교육 정책 및 법제

① 1996년 Law 2413/96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해 최초로 명시했다.

- 총11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화 간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그 내용과 기관 구성 등, 그리스에서의 문화 간 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다.

102) 그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ektaria Paleologou, Intercultural Education and Practice in Greece: Needs for Bilingual Intercultural Programmes, pp.2-15.



- ② “문화 간 교육 사무소”를 설립하였고, “그리스의 해외, 문화 간 및 예비의 교육”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는 다양한 공동체가 특정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 정부가 처음으로 인식함으로써 생긴 것이다.
- ③ 그리스의 학교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시도로, “유치원”이나 “개별 지도 수업” 등이 있다. “개별 지도 수업”은 소수 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몇 시간의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이다.<sup>103)</sup>
- ④ 그리스 학교에서의 이중 언어 정책은 거의 부재하고 전통적인 이중 언어 프로그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 학생들에게 학업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셈이며, 문화 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sup>104)</sup>

## 5. 미 국

### (1) 다문화 교육 정책

- ① 미국에서는 문화 간 운동(Intercultural Education Movement),<sup>105)</sup> 그룹 간 운동(Intergroup Education Movement),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

103) 학생들이 받는 수업의 양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각각의 수업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당 3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다양하다. ‘맞이반 수업(Reception Class)’은 그룹 당 5시간에서 10시간의 지도를 받는다.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학교를 다녔는가, 얼마나 오래 보충 수업을 받았는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언어적으로 충분한지에 따라 시간이 다른데, 초보자는 주당 10시간의 지도를 받는다. 수업 마지막 날 그들은 주류 학급에 다니게 되며, 그리스 학생들의 언어 수준에 맞추어진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하게 될 것이라 기대된다.

104) Nektaria Paleologou, Intercultural Education and Practice in Greece: Needs for Bilingual Intercultural Programmes, pp.2-15.

105) C. Banks는 문화 간 운동이 1930년대에 시작되어 1950년대에 이르렀다고 한다.

Movement), 그리고 민족 연구 운동(Ethnic Studies Movement) 등이 진행되었다.<sup>106)107)108)</sup>

- ② 이 중 1955년에서 1965년의 시민권 운동<sup>109)</sup>은 자유, 존중, 존엄, 경제적 사회적 평등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다문화 교육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③ 민족연구운동은 1960년대 시민권 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 시기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다른 유색인종 집단의 일원들은 정책, 주택과 학교에서의 실행에서의 평등을 요구했다. 이후 1970년대, 다문화 교육이 일련의 행동으로써 자라게 되었고, 장학금과 유색인종, 여성, 그리고 장애인들과 동성애자들의 참여로 힘을 얻었다.
- ④ “아무도 미국인을 대표하지 않는다”(No One Model American)는 표현에서 나타내듯이,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해 또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 쉽게 이해하고 논쟁에서 되풀이 할 수 있는 건전한 슬로건이며, 현재 다문화 교육 협회(National Association

---

106) 이에 대하여 Carl A. Grant,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Journey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pp.3-9 참조.

107) 뉴욕시의 경우를 보면, 1930년대, 40년대 “문화 간 교육을 위한 서비스 위원회”의 설립자이자 퀘이커교도인, Rachel Davis Dubois은 지역의 ‘각성’ 직원 발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뉴욕시 교사들에게 재직 중 수업을 제공하였다. 뉴욕시에서 문화 간 교육 운동은 194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진행 중인 학교차별에 대한 전쟁이 있었지만, 1965년 지역사회 관리 운동 동안 다문화 문제에 대한 초점이 뉴욕시 학교의 최전선에 있었다. 1989년, 뉴욕시 사회 교과 과정에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교과과정 운동이 있었고, 이러한 운동에 대한 결과로 뉴욕교육위원회는 포괄적인 다문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양화할 것”과 “이중 언어 구사 학생에게 기회를 줄 것”이 장려되었다.

108) Lauri Johnson, *Multicultural Policy as Social Activism: redefing who counts in multicultural education*,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vol.6 no.2, 2003, pp.107-117.

109) 시민권 운동의 주축이 되는 운동은 1955년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Rosa Park가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버스 뒷자리로 갈 것을 거절했을 때 발생하였다.

for Multicultural Education; NAME)는 연간 회의를 통해 조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연례회의에는 1,500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여한다.<sup>110)</sup>

## (2) 법 제

### 1) 다문화 이전 법제

#### ① 1970년 귀화법

- 귀화하고 싶은 지원자들이 2년간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법정에서 좋은 품성을 갖고 있다는 증명을 요구했다.
- 부족이나 ‘국내 외지인’의 일원으로 간주되는 인디언 뿐 아니라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과 백인이 아닌 이민자들을 배제했다.

#### ② Jim Crow법

- 시민전쟁과 노예 해방 이래로, 인종에 근거한 교육 정책은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지속되어왔다. 멕시코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 또한 차별적인 학교 교육을 경험했으며, 종종 이것은 문화와 언어 차이를 배경으로 정당화되었다.<sup>111)112)</sup>

---

110) Carl A. Grant, *The Educ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 Journey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pp.1-14.

111) 뉴욕시의 경우를 보면, 1930년대, 40년대 “문화 간 교육을 위한 서비스 위원회”의 설립자이자 퀘이커교도인, Rachel Davis Dubois은 지역의 ‘각성’ 직원 발전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뉴욕시 교사들에게 재직 중 수업을 제공하였다. 뉴욕시에서 문화 간 교육 운동은 194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진행 중인 학교차별에 대한 전쟁이 있었지만, 1965년 지역사회 관리 운동 동안 다문화 문제에 대한 초점이 뉴욕시 학교의 최전선에 있었다. 1989년, 뉴욕시 사회 교과 과정에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교과과정 운동이 있었고, 이러한 운동에 대한 결과로 뉴욕교육위원회는 포괄적인 다문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양화할 것”과 “이중 언어 구사 학생에게 기회를 줄 것”이 장려되었다.

112) Lauri Johnson, *Multicultural Policy as Social Activism: redefining who counts in multicultural education*,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vol.6 no.2, 2003, pp.107-117.

## 2) 다문화 법제

- 미국 내에서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입법을 이루어졌는데, 연방대법원의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에서는 “분리하되 평등(seperate but equal)”이라는 법적 신조를 뒤집었고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하였다.<sup>113)</sup>
- 「1964년 시민의 권리에 관한 법률」(Title IV of the 1964 Civil Rights Act)은 학교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였다.<sup>114)</sup>
- 1965년의 「투표법」은 자격 있는 시민에게도 투표권을 되돌려 주었다.
- 1968년 「시민권법」은 주택의 매매와 대여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였다.
- 미국의 다문화 법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11) 미국의 다문화법제<sup>115)</sup>

1961년 시행된 ‘적극적 차별수정정책(Affirmative Action)
1964년 시민법(Civil Right Act)의 TitleIV
1965년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13) 1954년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의 ‘분리하되 평등한 교육’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연방 정부는 교육 정책에서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교육 정책의 대다수는 차별철폐법을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유색인종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목표로 실행되었다.

114) 미국의 어느 누구도, 인종, 피부 색, 태생에 의해 참여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며, 복지 혜택이 부인되지 않으며, 어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부터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No person in the United States shall, on the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gin, be subjected to discrimination under any program or activity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75, p 40)

115) 자세한 내용은 허진영,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현황, 정책 및 법령, 2012년 2012년 5월 18일 다문화교육법제화방안 워크숍 발제문 참조.

1965년 ‘초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
1968년에 수정된 ESEA의 TitleVII, 1974년 긴급학교 보조법안(Emergency School Aid Act: ESAA)의 TitleVII
1974년의 평등교육기회법(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ct)
1975년에 제정된 ‘인디언 자기결정과 교육 원조령(Indian Self-Determination and Education Assistance Act)
1980년 ‘난민교육원조령(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
2001년 ‘낙오자 없는 교육에 관한 법(No Child Left Behind: NCLB)

## 6. 아일랜드

- ① 아일랜드 헌법은 “국가는 아동의 기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육자는 가족이며, 종교적, 윤리적, 지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교육을 위하여 그들 고유의 방식에 따라 교육하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② 아일랜드의 1971년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 ③ 2000-2004년 동등지위법은 교육 접근의 차별은 금지된다.

(표12) 아일랜드 교육 관련 법제

아일랜드 헌법(1937)
42.1장은 “국가는 아동의 기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육자는 가족이며, 종교적, 윤리적, 지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교육을 위하여, 그들 방식에 따라 교육하는 부모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의무를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고등교육법 , 1971

<p>고등교육법(HEA)의 기능 중 하나는 고등 교육에서 기회의 평등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다.</p>
<p>대학법, 1997</p>
<p>대학의 주요한 목적은 “대학 전통의 다양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한편, 문화적, 사회적 생존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 그리고 학생들, 대학 직원들 사이의 성적 균형과 기회의 평등을 장려한다.”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국가의 이민법의 범위 내에서, 학생회에서 발언권이 심각하게 낮은 사회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정책 접근을 개선시키고 이를 수행해야만 한다. 고등교육법(HEA)은 이러한 정책과 수행을 검토할 수 있다.</p>
<p>교육법, 1998</p>
<p>교육 체제는 “학생들, 그들의 부모들 그리고 교육이 제공된 국가들에 책임을 져야만 한하고,” “아일랜드 사회에서 가치, 신념, 언어 그리고 전통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학교, 후원자,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다른 학교 직원, 학교나 국가에서 만든 지원하는 공동체”에 관여해야 한다.</p>
<p>자격법(교육과 훈련), 1999</p>
<p>“모든 학습자들을 위한 접근권과 기회를 촉진함으로써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가 밖 기관에 의한 지원을 촉진하는 것 ; 그리고 더 많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고등 교육과 훈련 과정 사이에 교육과 훈련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것 ; 이 법은 2001년 아일랜드의 국가 평가원, 2003년 국가 평가 초안(NFQ), 평가 인정원의 창설을 이끌어냈다.</p>
<p>동등 지위 법, 2000~2004</p>
<p>9개의 구체적인 배경 속에서, 집시 사회의 인종과 일원을 포함하여, 특히 서비스 조항과 교육에 대한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특정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교육 기관은 4가지 점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 입학, 출입, 조건 또는 제적. 입학에서의 차별은, 학교의 종교적 풍토의 유지가 보장된다면, 학교의 입학 정책에서 널리 알려진 차별과 같은 것은 허용된다.</p>
<p>교육(복지)법, 2000</p>

<p>학교에의 참가와 행위와 관련된 학생이 문제를 겪는 점에 있어,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들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 국가 교육 복지 위원회(NEWB)를 설립했다. 학교는 출석 문제가 있는 경우 학교는 학부모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온전한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 고안된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한다.</p>
<p>청년 활동법, 2001</p>
<p>“청년 활동”을 “젊은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전에 도움을 주고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정의하며, 이는 “그들의 공식적, 학문적, 직업 교육과 훈련을 보충하는 것이다 ;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청년 활동 기관이 제공한다.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문화 간 사회에서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기술과 자신감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 젊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p>
<p>공과대학법, 2006</p>
<p>각각의 공대는 국가 이민법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 장애인, 과소평가되고 있는 사회의 다른 부분 출신의 사람들을 위한 접근 정책을 이행해야만 한다. HEA는 그들의 정책과 수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p>

### 제 3 절 글로벌 다문화교육 정책 및 법제화 현황

#### 1. 민주사회통합을 위한 글로벌 다문화교육 정책 방안

##### (1) 민주사회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방안

##### 1) 상호문화교육 및 이주민 문화이해 교육 확대 실시

미국의 다문화운동가들은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민주 사회를 위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교육 정책에 민주 사회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이 그 목표



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 출신문화에 따른 가족생활 형식 및 지역사회 생활 형식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교육관련 정책의 초점은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전통 문화, 예절 교육, 음식조리교육 등에,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학습능력향상과 학교적응을 위한 교육에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이주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보다는, 이주민을 한국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데에 보다 기울어져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존 문화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수용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sup>116)</sup>

더불어 다문화교육보다 상호문화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이주민 및 일반시민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현행 관 주도형 다문화정책의 수정 및 네트워크 구축

현행 다문화정책이 관주도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어 다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은 앞서 상술했다. 그러나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관주도의 다문화정책이 아닌 민간주도형 다문화정책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다문화교육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

116) 일방적인 동화의 성격이나, 성적 불평등 내지는 가부장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은 우리 사회의 다원화를 증진시키는 기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영훈, 전개논문, 참조.



## (2) 시민교육과 법문화교육

### ① 시민교육

독일의 경우에 다문화교육정책은 언어와 문화적응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지향하는 외에도 지역사무소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의 직업 및 진로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교육의 초점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인 이주민을 포함한 일반시민에 대한 세계 시민성 함양 교육에 있다. 다문화교육에 언어, 문화 교육은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교육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sup>117)</sup> 즉, 기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물론,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편견 제거를 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시민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세계 시민성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는 세계 시민의 가치와 태도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sup>118)</sup> 이러한 교육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단기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법문화교육

앞서 정책적으로 법질서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교육에서는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률교육 내지 법질서 교육, 다시 말해서 “법문화교육”이다.

이미 2010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sup>119)</sup>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의식 교

---

117) 김태원, “다문화주의와 ‘통합적’ 다문화교육의 실제와 모색 :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2012년 6월 22일 글로벌다문화교육법제화방안 워크숍 자료집, 1-2면 참조.

118) 김정호, 다문화 시대의 한민족 정체성 교육 방법 모색, 글로벌교육연구 제2집 제2호, 55면.

119) 자세한 내용은 나달숙 외,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 참조.

육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체험중심으로 법 관련 문제를 다루었고, 한국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에 따라 마련된 법문화교육프로그램의 유형은 게임방법, 역할극, 시청각 자료 이용교수법, 토론, 토의학습, 서식작성법 등을 내용별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 다양한 프로그램의 적용 활용성을 높이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sup>120)</sup>

## 2. 대상별 글로벌 다문화교육 정책 방안

### (1) 대상별 다문화교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산재하고 있지만 교육프로그램과 내용은 획일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하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서 상술했다.

좀 더 부연하면 독일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진로 및 취업교육, 이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이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정책의 중심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다양한 기관들이 차별성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편중성이 지적을 받는다. 학교교육은 언어, 문화 교육에 중점을 둔 시민성 함양, 시민단체의 교육은 직업교육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sup>121)</sup> 다음과 같이 대상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의 중심이 달라져야 함도 더불어 주장된다.

---

120) 운영방법과 연수개요에 대하여 나달숙 외, (체험 활동 중심)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2010, 2면 이하 참고. 이 매뉴얼은 나달숙 외,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 수행의 결과 마련된 것이다.

121) 김태원, 전개논문, 1-2면 참조.

### 1) 교사의 다문화 교수법 훈련

다문화 학생 교육에 있어 교사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교육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다문화교육에서 보다 그러한 것은 교사의 태도나 행동은 교사의 가치, 신념이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인종에 대해서 민주적인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에 중요한 변인 되기 때문이다.<sup>122)</sup> 교사 훈련은 다문화라는 특성에 맞는 교수법과 이민 학생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더욱 적절하게 다룰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sup>123)</sup>

상술하였듯 2012년도 정부의 정책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교사에 대한 정책이 계획된 바 있다. 이를 참고하여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① 다문화학생의 학적관리,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을 위한 교사용 참고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sup>124)</sup>
- ② 교육대학교의 다문화학생 특별 전형을 확대하여 다문화학생이 직접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2013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전국 교대에 다문화학생 특별전형을 개설한다.<sup>125)</sup>

---

122) 채정란,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본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생활주제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7-18면.

123) Nektaria Paleologou, Intercultural Education and Practice in Greece: Needs for Bilingual Intercultural Programmes, pp.2-15.

124) 이 때 학적관리 매뉴얼이란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학적생성 및 관리 방법, 각종 평가 실시 방법 등을 포함한 관리전반에 관한 자료이고, 생활지도 매뉴얼은 각국의 문화 안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문화학생 지도상 어려운 점 및 해결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이다. 학부모 상담용 학교 용어사전은 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발음을 병기한 자료로 학부모 상담시 활용 가능하다.

125) 2012년 춘천교대에 5명 특별전형을 개설하였으며, 2013년은 20명으로 대상학교를 확대한다. 이른바 “다문화 특별전형”이다.

- ③ 교원 양성, 연수과정의 개선이다. 교대, 사대 다문화강좌 운영 현황을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전체 교대, 사대 중 30개교에서 다문화강좌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교사 직무연수에 “다문화교육 이해과정”을 포함하고 다문화 이해연수를 기초에서 심화연수로 체계화한다.
- ④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연구를 확대한다. 현장 교사들의 다문화 이해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학교를 2011년 16개교에서 2012년 23개교로 확대한다.<sup>126)</sup>

## 2) 이주민의 법률 교육

- 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들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sup>127)</sup> 이처럼 이주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언어와 문화교육이라는 전제 하에 사회 적응 교육과 법률 교육, 다시 말해서 법률 교육(법질서교육 내지 법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독일은 이미 이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문화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데 참조할 만하다.<sup>128)</sup>

법률 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일반인에 대한 법률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 지식의 바탕에 있는 기본 원칙과 가치 교육을 말한다.<sup>129)</sup>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이주민은 출신국에 따른 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동할 수 있는 한국의 법률 문화를 습득할 수 있고, 사회 내에

126)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인용.

127) 장준호, 독일 초등학교의 다문화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 9, 153면.

128) 자세한 내용은 오영훈, 전개논문 참조.

129) Caliber Associates, The Promise of Law-Related Education as Delinquency Prevention, Technical Assistance Bulletin, America Bar Association no.19, 2002, p.1; 나달숙 외, 법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2010, 15면.

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이주민이 겪을 수 있는 피해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남편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신고절차나 한국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교육은 이주민의 한국 사회에서의 잠재적 피해로부터의 하나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상술한 2010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구에서 법교육의 대상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가 이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에 방향을 제시해준 것으로 보인다.

-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이 한국의 법률과 문화를 익혀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헌법상 기본권, 다문화 법령, 국적 취득 등을 교육하고, 혼인 관련 법률, 가정과 상속 관련 법률, 노동 관련 법률 등을 교육하도록 국가 생활과 개인 생활을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 초등학생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이 법률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다문화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소양을 키우고 편견을 없애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북한이탈주민 대상 프로그램”

성인 중심의 탈북자들이 기존과 다른 헌법질서체제를 이해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sup>130)</sup>

---

130) 상세한 내용은 나달숙 외, 전계보고서, 28-34면 참조.

### 3)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 ① 2012년도 정부정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한 대학진학기회 확대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을 두어, 지원 자격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선발하고, 재직자 특별전형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선발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 ②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직업교육 활성화 정책도 제시하였다. 다문화 직업교육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2012년 서울 120명, 충북 135명, 2013년 인천 1개교(210명)를 추가 설립할 예정이고, “다솜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다문화학생이 선호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문화학생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강료, 실습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의 기회 뿐 아니라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다문화가정 자녀의 선발은 대학 뿐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에도 도입하여 부모님의 출신국의 언어를 배우고 쓸 수 있는 기회를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부모의 언어까지 습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sup>131)</sup>

- ③ 미국도 이중다문화교육(Bilingual Multicultural Education)의 하나로 이중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란 영어와 유산언어, 두 언어를 지도언어로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출신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는

---

131) 장한업 교수의 견해임.

어려워도 이러한 특별한 캠프를 통하여 부모의 출신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④ 독일에서는 청소년센터(Jugendzentrum)가 설립되어 있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각 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부서를 두어 모국어 적응프로그램, 언어프로그램, 독일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sup>132)</sup>

⑤ 1989년 OECD는 회원 국가들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전제해야 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는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33)</sup>

- 학교문화의 자문화 중심성을 극복하고 학교 내에 다양한 문화가 실재함을 합법화한다.
- 학교와 가정 간의 연속성을 강화함으로써, 부모나 그들 문화를 통해 잘못된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 주입식 교육이 아닌 적극적 획득 과정으로서 언어나 문화를 가르친다.
- 교수상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한다.
- 모두를 위한 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 교육체제와 학교의 다원주의를 보증한다.
-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

132) 이외에도 이주청소년담당기관, 노동자복지협회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 밖에도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장(Zukunftswerkstatt)’의 방학 캠프, ‘아프리카를 만난다(Begegnung mit Afrika)’ 등이 마련되어있다.

133) 강순원, 공생 평화 인권 향한 다문화교육을 바란다, 우리교육 2008. 6, 29면의 번역을 인용함.



#### 4)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문화 이해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일반 학생에게 중요한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학생은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것에도 장애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존해야 할 다문화가정 자녀들과도 공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134)</sup> 독일에서는 다문화 교육은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경험과 토론의 기회를 주어 민주시민으로서 갈등을 예방,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sup>135)</sup> 이처럼 만남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 서로 다른 문화에 익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미 다문화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향후 시민교육의 형태로 진화된 다문화교육을 기대한다.

### 3.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 방안

#### (1) 인권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 1) 다문화 인권 관련 선언 및 법률

- ① 1978년 11월 28일 제20차 UNESCO총회에서 채택된  
“인종과 인종 편견에 관한 선언”

다음과 같이 인종적 편견을 방지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134) 장한업, 프랑스 상호문화교육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2012년 6월 22일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한국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 워크숍 자료집, 34면.

135) 장준호, 독일 초등학교의 다문화 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2011. 9, 154면.



제 6 조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시민과 정치의 권리에 관한 세계 협약’에 구체화된 원칙에 따라, 그중에서도 특히 인종 차별, 인종주의 선전, 인종 분리 그리고 인종 분리 정책을 방지하며 인종적 편견과 인종 차별 주의적 태도의 원인과 방지를 위해 자연과학 및 사회 과학에서의 적절한 조사에서의 지식과 발견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 인종 교육, 문화 그리고 소통의 범위에서의 입법을 취해야 한다.

- ② 1985년 5월 14일 제385차 차관 회의에서 채택된 유럽 회의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육과 배움에 관한 회원국들에 대한 각료 회의의 권고문 No. R(85)7”

1. 회원국의 정부들이 그들 국가의 교육 체제와 법률적 근거와 관련하여 다음을 권고한다.
  - a. 이 문서의 부록에 있는 제안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가르침 및 배움을 장려한다.
  - b. 이 권고문 속의 학교 교육과 관련한 개인과 기관의 주의를 이끌어 낸다.

1. 학교 교과과정에서의 인권

- 1.4. 인권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분야를 포함한다. 따라서 인권에 관한 교육은 항상 평가의 기준으로써의 동의와 규약을 가져야만 하고,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 대한 개인적 신념을 강요하거나 그들과 이념적인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5. 교사 교육

- 5.1. 교사 훈련은 그들 학교에서의 인권에 관한 교육에 장래에 공헌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③ 인권과 기본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제14조 이 협약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사회적 출신, 민족적인 소수집단 소속성, 재산 등 출생과 동시에 혹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지위에 의해서 근거지워지는 차별없이 보장된다<sup>136)</sup>

④ 캐나다 다문화주의법

캐나다 다문화주의법은 다문화주의를 선언하면서 인권위원회 설립을 규정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인종, 국적 또는 민족, 피부색과 종교 등이 캐나다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특징들이 캐나다의 다양성의 근원으로 인식하며, 캐나다인들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생활에서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다문화 정책에 힘을 쏟는다.

2) 기존 법률상 인권존중과 차별금지 규정 신설

- ①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 용어 정의를 비롯하여 이주민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 ② 미국 메릴랜드 몽고메리 주 규칙<sup>137)</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정의 규정을 두어 차별을 배제한다.

136) 차별금지원칙에 대해 박진완,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이민국가적 요구의 수용을 위한 헌법적 기준제시, IOM이민정책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No.2011-07, 13면 이하 참조.

137) Multicultural Education (State Regulation)

“02 정 의

A 이 장에서, 다음 용어들은 (개념)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B. (개념)정의된 용어들

- (1) “편견”이란 정신적인 기쁨 또는 경향 또는 치우침을 의미한다.
- (2) “평범”이란 공통의 특성, 성격 또는 특징 또는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문화적 집단”은 인종, 민족, 지역, 성, 언어, 사회 경제적 상태, 나이 또는 장애 등의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 (4) “문화적 언어상의 각각의 문화 집단에 있는 언어적으로 독특한 양식을 의미한다.
- (5) “차별”이란 편견에 의해 촉발된 배제의 행위를 의미한다.
- (6) “다양성”이란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성, 언어, 사회 경제적 상황, 나이, 그리고 장애에 한정되지 않지만 이에 근거한 차이점을 의미한다.
- (7) “민족성”이란 다른 인종 집단의 구분 또는 제휴 또는 사람들의 국적 상 구분을 의미한다.
- (10) “다원주의 사회”는 민족적 기원, 문화적 패턴, 종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서 명백하게 구분되는 집단의 국가나 사회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 (11) “편견”은 암시적이고, 사전에 형성된, 그리고 비합리적인 판단 또는 의견, 보통 의심, 공포, 불관용 또는 증오에 의해 형성된 비호감인 것을 의미한다.
- (12) “인종 파별주의”는 인종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와 태도를 의미한다.
- (13) “성차별”은 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와 태도를 의미한다.
- (14)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개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2) “언어교육법” 제정

현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사회통합교육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38)</sup> 출신국의 언어

교육 또한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단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그 출신국의 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① 미국의 뉴멕시코주 이중언어 다문화교육법  
(Bilingual Multicultural Education Act)

- 뉴멕시코주의 모든 학생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에 대해 출신국 교사 우선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미국의 이중언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발달, 이행, 관리를 위해서 이중언어교육을 받은 뉴멕시코주 주민들을 우선 채용한다(22-23-4 D).

(표) 뉴멕시코주 이중언어 다문화교육법

<p>B. 뉴멕시코 주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p> <p>(1) 영어와 함께 스페인어, 문자 형식이 존재하고 종족 허가가 있는 북미원주민 언어, 또는 그 밖의 언어를 포함한 제2의 언어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고,</p> <p>(2) 모든 과목에 있어서 뉴멕시코 주의 교육 기본 기준을 만족시키는데 있다.</p> <p>(...중략)</p> <p>G. 지역의 피고용인들(선생님, 보조 선생님, 교장, 이중언어 책임교원들, 부서 관리자, 재정 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발전이 요구된다.</p> <p>(1) 조사에 바탕을 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그 집행,</p> <p>(2)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영어 능력 발달,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최선의 학습방법,</p> <p>(3) 학업적, 언어적 발달을 위한 수업평가.</p> <p>H. 학부모들 또한 교사들과 지역의 피고용인들과 함께 어떤 형태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자녀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일지</p>
-----------------------------------------------------------------------------------------------------------------------------------------------------------------------------------------------------------------------------------------------------------------------------------------------------------------------------------------------------------------------------------------------------------------------------------------------------------------------------------------------------------------------------------------------------------------

13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 제1항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지역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영어나 그들의 언어로 제공한다.

- I. 조사에서 따르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학업적으로 능숙하게 습득하는 데는 5-7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아동 언어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멕시코 주는 3세 이후의 아동들을 지원하기 전에 3세까지의 아동들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선한다.

(...중략)

L.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법률은 뉴멕시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 (1)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 (2) 학생들의 개념적, 언어적 능력과 가능성을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 (3)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와 언어의 가치와 미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므로 해서,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장려한다.

② 유럽 회의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 간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의 교사들 훈련에 관한 각료 회의의 권고문 No. R(84) 18”  
(1984년 9월 25일 375차 차관 회의에서 채택됨)

5. 동시에, 이민 역사와 체류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출신국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를 융합하는 학교 교과 과정과 교육학 차원에서 이민자 공동체 출신의 교사들의 채용을 장려한다.

③ 프랑스의 회람

초등교육에 관한 1973년 2월 2일자 회람에 의해 출신 언어문화교육이 “각성활동”(activités de réveil)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프랑스어와 함께 출신국의 언어 문화교육을 실시한 것이며, 1975년과 1977년 사이에 초

중등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의 국가어(langues nationales) 교육에 관한 회람<sup>139)</sup>이 공포되었다.<sup>140)</sup>

#### ④ 소 결

우리도 이민자 자녀의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어 보충교육이나 학업보조 정도로는 부족하며 이중 화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sup>141)</sup>

실제 한 학교에서는 2007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년간 다문화가정 학생의 적응을 돕고 이중 언어 사용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다문화 교육 및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이중 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를 연구과제로 수행한 바 있다.<sup>142)</sup><sup>143)</sup>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언어교육법이 필요하다.

---

139) 1975년 4월 9일자 회람 75148호 - Enseignement des langues nationales à l'intention des élèves immigrés, dans le cadre du tier-temps pédagogique des écoles élémentaires ; 1976년 3월 30일자 회람 76128호 - Utilisation des locaux scolaires, en dehors des heures de classe, pour les cours de langue maternelle aux enfants concernés des écoles élémentaires; 1977년 2월 14일자 회람 77065호 - Mise en œuvre de la politique de diversification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vivantes ; 1977년 9월 28일자 회람 77345호 - Mise en place de cours de langues et de civilisations nationales en dehors du temps scolaire, dans les collèges, à l'intention des élèves étrangers scolarisés dans ces établissements.

140) 장한업, 프랑스 상호문화교육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2012년 6월 22일 글로벌 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한국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 워크숍 자료집, 17-20면.

141) 장한업교수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중학교 재량시간, 외국어고등학교 내 소수 어반 신설, 국제기능고등학교(가칭) 신설, 외국어전문대학 증설,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어머니의 언어를 잘 전수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을 주장한다. 장한업, 전계논문, 34면.

142) 다문화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을 돕기 위한 여건 조성,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환경을 조성을 통하여 국제성 유지와 신장의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백승훈,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 사례의 성과, 제3회 경기도문화교육포럼 및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추계 학술대회 <다문화사회를 위한 인문학적 성찰과 다문화교육 현장실천 사례>,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2007. 11. 23. 125면.

143) 수행한 연구과제의 상세한 내용은 백승훈, 전계논문, 128-136면 참조.

### (3) 소외된 이주민의 권리 규정 신설

이주민의 자녀라고 해서 법적 지위가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과 국내 거주중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한국 내에서 출생한 자녀들로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중도입국자녀들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취약계층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도입국자녀는 연간 2천여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지나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출신국의 교육과정과 차이가 심하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중도입국자녀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진학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sup>144)</sup>

이와 같이 법적 대상이 아닌 소외된 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sup>145)</sup>

### (4) 종래 입법 논의 검토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입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 1) 정부 발의 차별금지법안

예컨대 2007년 12월 12일 정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제 8002호)에 은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이 발의안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144) 박봉수, 전계논문, 90-91면 참조.

145) 비슷한 의견으로 이준표, 다문화교육 현황과 정책(토론문)-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2012년 6월 22일 글로벌다문화교육법제화방안 워크숍 자료집, 1-2면.



차별금지법안 제21조(교육 기회의 차별금지)

-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 2.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2) 최재성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

2009년 최재성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차별을 금지와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제6363호)을 대표발의하였다.<sup>146)</sup>

이 발의안은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였다.

---

146)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차별받은 학생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정책의 공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금지정책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및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공표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금지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교육차별의 금지) 누구든지 제5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을 받은 자녀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 4 조)
- ②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 6 조).<sup>147)</sup>
- ③ 교육기관의 장(長)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생활 및 이와 관련된 교육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차별을 받은 자녀 등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sup>148)</sup>
-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성 및 다문화가정 자녀간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

147) 발의안 제 6 조(교육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육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다문화가정 자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 2.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문화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생활지도 기준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5.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148) 제11조(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문화 요소를 반영한 교과서 발간 및 교육자료의 개발 보급지원 등 다문화 이헬르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 ⑦ 교육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 ⑧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 등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진정(陳情)할 수 있음(안 제15조)

### 3) 최근 발의안

2012년 11월 6일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또한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sup>149)</sup> 다문화교육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 조문이다.

#### 안 제26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 지원, 입학, 편입을 제한, 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 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27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으로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149) 차별금지법안(김재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643호), 2012. 11. 6.

## 4) 소 결

종래 발의된 정부안과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안은 모두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전자는 성별에 기인한 차별을, 후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폐기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이유가 되었다.

- ① 상술한 정부 발의안에 대해서는, “교육은 장래 경제, 사회적 상태를 결정짓는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고용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바, 사설교육기관이나 교직원 등 사인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차별 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차별 상태의 효과적인 시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교육기관의 종류나 차별의 형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과 현실의 괴리로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폐기하였다.<sup>150)</sup>

발의안은 다문화 관련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 예컨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안 제 3 조)<sup>151)</sup>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150) 법제사법위원회, 차별금지법안(정부) 검토보고, 2008.2. 34면.

151) 발의안 제 3 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② 최재성 의원안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며 몇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sup>152)</sup>

첫째, 이 발의안의 제명, 목적이 “마치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아닌 학생에 비해 차별을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발의안의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의 가족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가족으로 구성된 생활공동체”(안 제 2 조 2)로 정의되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에 포섭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가정까지 발의안은 다문화가정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발의안은 다음 표와 같이 종래 다문화가족보다 넓은 범위의 다문화가정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과 가정을 구분하는 것은 정책 과정에서 혼란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표14)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발의안 “다문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li>○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가족</li> <li>○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가족</li> </ul>

15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최재성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2011.6. 8면 이하.

셋째, 발의안 제7조의 “교육차별의 금지” 조항은 이미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두고 있는 규정이므로 중복할 필요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있었다.<sup>153)</sup> 마찬가지로 발의안 제11조가 규정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조항도 이미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이미 규정을 두고 있는 바이고, 제14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상담”도 이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sup>154)155)</sup>

15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55)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4) 다문화사회 및 교육기본법의 제정

이처럼 차별금지법안의 이름을 갖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입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발의안들은 교육기관의 장(長)에게 금지되는 (교육)차별의 형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다문화사회에서 장려되어야 할 교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다문화사회 교육의 비차별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교육기관의 장(長)에게 교육관련 차별 금지를 법적 의무로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사회에서 학교 교육 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교육 기회에 대한 균등이자, 차별 없는 교육의 제공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별개의 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이 요구되고, 그 형태는 현행 교육기본법을 보강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비록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비슷한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복 입법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 법제(가칭 “다문화사회 및 교육기본법”)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제 5 장 결 론

“이주의 시대”에 다문화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표현이 되었다. 기존의 학생 교육 위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같은 특정화된 대상 내지 객체에 대한 시혜적 교육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의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주민의 언어, 문화 교육은 물론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이들과의 공존을 위한 일반 시민의 현재 시행되는 교육보다 내용이 향상된 다문화 편견제거 교육과 이해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과 법제화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정책은 아직도 동화주의적 성격이 강한데, 이주민 관련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자민족중심주의를 버려야한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양성평등교육처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다문화교육에 관한 입법 발의안은 주로 차별금지법안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이 발의안이 가지는 의미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안의 형태보다는 독자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고에서는 언어교육법의 입법과 함께 다문화사회 및 교육기본법의 입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첨언하면,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상호문화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오해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상호문화” 용어 사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명정, 동반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제 17권 2호, 2011
- 김범수, 다문화사회 심계명, 리북, 2010
- 김선미, 영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전개의 특성, 교육문화연구 제17권 1호, 2011
- \_\_\_\_\_, 한국의 다문화교육,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9 인천교육 국제심포지움, 2009
- \_\_\_\_\_, ‘한국적’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의 성찰과 제언, 사회과교육, 2011
- 김은미 양옥경 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 김용신, 글로벌 시대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제49권 1호, 2010
- 김철주 고병철, 중등학교 다문화교육 교과목의 활성화 방향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36호, 2011
- 네이션 글레이저/서종남 최현미(역),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09
- 류옥자, 다문화이해교육 우리의 현주소는?, 교육정책 포럼 제162호, 한국교육개발원, 2007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윤진(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2002
- 모경환,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2007



참 고 문 헌

- \_\_\_\_\_, 김정수,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제 17권 1호, 2011
-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다문화의 이해 -주체와 타자의 존재방식과 재현양상-, 경진, 2009
- \_\_\_\_\_, 다문화주의의 이론과 실제, 경진, 2010
- 박기범, 공동체적 관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다문화교육 사이트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48권 1호, 2009
- 박지혜 이성숙, 실과 의생활 영역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3권 2호, 한국실과교육학회, 2010
- 박진완, 다문화 사회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토 이민국가적 요구의 수용을 위한 헌법적 기준제시-, IOM이민정책연구원 워킹페이퍼 시리즈, 2011
- 배현주, 미디어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가능성 모색, 교육문화연구 제 15권 1호, 2009
- 법무실무연구회,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정착 도우미, 2010
- 송미경, 다문화이해교육, 한계와 가능성, 교육정책 포럼 제162호, 한국 교육개발원, 2007
- 서종남,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제15권 제2호, 2009
- 신주철, 인권과 역지사지 관점에서의 다문화교육, 어문연구 제39권 제1호, 2011
- 오영훈,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독일의 상호문화교육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권 2호, 2009

- 안드레아 썬프리니/이산호 김휘택(역), 다문화주의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주의의 비판적 해석, 경진, 1997
-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천화, 2011
- 염미경, 다문화사회와 지역다문화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제13권 1호, 2011
- 이경수, 프랑스 다문화교육정책 무엇이 강점인가? -우리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5집, 2011
- 이경희,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2011
- 이성미, 다문화 코드 -코리언 드림 해법 찾기, 생각의 나무, 2010
- 장미영 이수라 고은미,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글솜대, 2009
- 장온정, 교사가 인지하는 초등학교 다문화교육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4권 1호,
- 장승희, 유교에서 본 다문화교육 시론, 유교사상연구 제34집, 한국유교학회, 2008
-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 천호성,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교육 비교 연구 -학교에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제50권 4호, 2011
- 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지구 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 하운수, 미국 다문화교육의 동향과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제48권 3호, 2009

참 고 문 헌

- Anonymous, Immigrant Races in North America, Nabu Press, 2010
- Afolayan, Michael Oladejo/Afolyan, Michael Oldjo, Multiculturalism in the Age of the Mosaic, [Nova Science Publishers, 2011
- Banks, James, 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Addison -Wesley, 2007
- Cuyjet, Michael J./Howard-Hamilton, Mary F. /Cooper, Diane L., Multiculturalism on Campus, Stylus Publishing (VA), 2011
- Day, Richard J. F., Multiculturalism and the History of Canadian D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0
- Greburn, Nelson/Ertl, John/Tierney, Kenji R., Berghahn Books, 2010
- Kymlicka, Will/He, Baogang, Multiculturalism in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USA, 2005
- Lott, Bernice, Multiculturalism and Diversity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Wiley-Blackwell, 2009
- McNamara, Robert/Burns, Ronald, Multiculturalism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8
- Miller, Frederic P./Vandome, Agnes F./McBrewster, John, Higher Education in Canada, Alphascript Publishing, 2009
- Miller, Frederic P./Vandome, Agnes F./McBrewster, John, Multiculturalism - Multiculturalism, Demographics of Canada, Culturalmosaic, Immigration to Canada, Demographics of Argentina, Balkanization, Racial integration, Racialism, Culturalcompetence, Multi- Ethnic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Alphascript Publishing, 2009

- Phillips, Anne,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University Press Group, 2007
- Race, Richard, Multiculturalism and Education, Continuum, 2011
- Regan, Vera/Lema(c)E, Isabelle/Conrick, Maeve, Multiculturalism and Integration - Canadian and Irish Experiences, University of Ottawa Press, 2010
- Seynnaeve, Anneke, Immigrant Muslim Women in France and Germany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VDM Verlag, 2007
- Shachar, Ayelet, Multiculturalism -A Critical Information, Routledge, 2012
- Shriver, William Payne, Immigrant Forces -Factors in the New Democracy, Thomson Press, 2009
- Tolley, Erin/Young, Robert A., Immigrant Settlement Policy in Canadian Municipalitie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1
- Trueba, Enrique T./Bartolome, Lilia I./ Ayala, Encarnacion Soriano(CON), Immigrant Voices -In Search of Educational Equit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0

부록

## 부 록

### 캐나다 다문화법

RSC., 1985, c. 24 (4번째 보완)

2012 5월 31일 현행

2003, 4월 1일 최신 개정

사법부에 의해 간행됨

<http://laws-lois.justice.gc.ca>

공식적인 통합 현황

2009년 6월 1일 시행중인 입법개정과 통합법의 하부 조항 31(1)과 (2),은 다음과 같다;

31. (1) 모순점이 없다면, 인쇄물이든 전자 형태이든 관계없이, 이 법에 의거하여 각료(The Minister)가 공포한 통합 법령 또는 통합 규정은 그 법 또는 규정 그리고 그 내용의 증거이며, 각료(The Minister)에 의해 공포될 것으로 예정된 모든 초안은 공포된 것으로 간주된다.
- (2) 이 법과 원래의 법 또는 법률 공포 법에 근거하여 의회 서기에 의해 공인된 초안 또는 차후의 수정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시, 원래의 법 또는 개정판은 불일치가 있는 범위까지 포괄한다.

#### 주 의

이 통합본은 2012년 5월 31일 현행법이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3년 4월 1일에 이루어졌다. 2012년 이래로 시행되지 않은 수정안은 ‘실행중이지 않은 수정안’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 문서의 끝에 게시한다.

부 록

규정표

캐나다에서의 다문화주의 보존과 증진을 위한 법

소제

해석

정의

캐나다의 다문화정책

다문화 정책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수행

통합에 대한 일반 책무

캐나다 다문화주의 자문 위원회

일 반

연간 보고서

의회상설 보고서

R.S.C., 1985, c. 24 (네 번째 추가)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

전문: 캐나다 헌법은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 없이 동등한 보호와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고 양심, 사상, 신념, 의견 표출, 표현, 평화로운 집회와 회합의 자유가 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캐나다의 다문화 전통의 보존과 발전의 중요성을 인지한다.



그리고 캐나다 헌법과 공식어법은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임을 규정하는 한편, 다른 언어에 있어 이미 획득되고 누려지고 있는 어떤 권리의 박탈이나 훼손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법은 출생이나, 선택에 의한 모든 캐나다민이 동등한 지위를 누리며, 같은 권리, 권위, 특권을 부여받고, 동일한 의무, 책임과 부담을 질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캐나다 인권법은 모든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그 개인이 유지 가능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다른 개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종, 국적, 민족 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금지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인권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캐나다는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의 당사국이며, 이 회의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모든 차별과 차별을 선동하는 것에 대항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또한 캐나다는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며, 이 협약은 민족적, 종교, 언어 소수자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그들 자신의 종교적 신앙을 고백하고 실행할 권리와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인종, 국적 또는 민족, 피부색과 종교 등이 캐나다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특징들이 캐나다의 다양성의 근원으로 인식하며, 캐나다인들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생활에서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도록 고안된 다문화 정책에 힘을 쏟는다.

이제 여왕 폐하,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부 록

### 소 제

1. 이 법은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으로 언급될 것이다.

### 내 용

1. 이 법에서는

“연방법”은 다음에 오는 모든 캐나다 정부 헌법을 의미한다.

(a) 부, 원, 위원회 또는 협회, 또는 다른 이사회, 국이 의회법 또는 정부 위원회의 권위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고

(b) 재무 행정법의 2장에 정의된 지역 또는 정부에 운영되는 기업

(c) Northwest Territories(지역이름) 위원회 또는 Yukon 또는 Nunavut 의 정부 또는 입법부, 또는

(d) 모든 인디안 부족, 부족 위원회 또는 인디아 부족이나 다른 원주민 집단과 관련된 정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부

“Minister(각료)” 은 이 법을 수행하기 위한 각료로서 지명된 캐나다 Queen’s 추밀원의 일원이다.

### 캐나다 다문화 정책

3. (1) 이에 의하여 캐나다 정부의 정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사회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이해를 인식하고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캐나다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보장한다;

(b) 다문화주의가 캐나다 유산과 정체성의 근본적인 특성이며 다문화주의가 캐나다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라는 이해를 인식하고 촉진한다;

- (c) 캐나다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성하는데 있어 모든 태생의 개인과 공동체의 공평한 참여를 촉진시키며 그들이 참여하는데 있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조력한다;
  - (d) 구성원들이 공통의 기원과 캐나다 사회에 대한 공헌이 있음을 인지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한다.
  - (e)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모든 개인이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음을 확실히 한다
  - (f) 캐나다의 다문화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포괄하기 위해 캐나다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기관들을 장려하고 원조한다
  - (g) 다른 태생의 개인과 공동체간의 상호작용이 창의성을 증진한다는 이해를 장려한다
  - (h) 캐나다 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지지하며 그러한 문화에 대한 표현을 반영함과 촉진함을 돕는다
  - (i) 캐나다의 공식 언어의 권위와 사용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 프랑스어 이외의 언어 사용을 보장하고 진작시킨다
  - (j) 캐나다의 공식 언어에 대한 국가 의무와 조화를 이루어 캐나다 전체의 다문화주의를 발전시킨다
- (2) 캐나다 정부의 정책은 모든 연방이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함을 선언한다
- (a) 모든 태생의 캐나다인들이 그들 기관에서의 고용과 승진에서 동일한 기회를 얻도록 보장한다
  - (b) 캐나다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모든 태생의 개인과 공동체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정책, 프로그램, 실행을 촉진한다
  - (c) 캐나다 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정책, 프로그램, 실행을 촉진한다

- (d) 캐나다의 다문화 상황에 관련 있는 정책, 프로그램과 실행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수집한다
- (e) 모든 태생의 개인의 언어 기술과 문화적 이해를 적절하게 이용한다. 그리고
- (f)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다문화 현실에 관련된 방식으로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

#### 캐나다 다문화 정책 이행

1. 각료(The Minister)는 다른 정부(Crown)의 각료와 협의하여,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는 데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촉진하며 그 정책을 원조하는데 있어 프로그램과 실행의 발전과 이행에 조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5. (1) 각료(The Minister)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을 취해야만 하며, 전술한 통칙에 대한 제한 없이,
  - (a) 캐나다 안 또는 밖에서의 활동에서 캐나다 다문화주의 현실을 계획하기 위해 개인, 기구, 기관 등을 격려하고 보조한다.
  - (b) 캐나다의 다양한 공동체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고무시킨다
  - (c) 모든 태생의 개인과 그들의 공동체의 사회, 경제적 면을 포함한 캐나다 사회에서의 온전한 참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캐나다의 다문화 현실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도록 촉구한다는 면에서 공공 기관 뿐 아니라 사업체, 노동 기관, 자원봉사 기관 또는 개인 기관을 장려한다
  - (e) 캐나다의 다문화적 전통의 증진, 공유, 발전에 대한 표현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 (f) 캐나다의 다문화 전통에 공헌하는 모든 언어의 취, 득 보유 그리고 사용을 돕는다
  - (g) 민족과 관련된 문화적 소수 공동체가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장벽, 특히 인종이나 민족 또는 태생에 근거한 차별을 극복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 (h) 캐나다에서 다문화주의를 보존, 향상, 고무시키기 위한 목적 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지원한다
  - (i) 다른 연방 기관을 지정한 법에 의하지 않은, 캐나다의 다문 화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다문화에 관한 다른 프로젝 트나 프로그램을 맡는다
- (2) 각료(The Minister)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이행하는 것에 관련하여 다른 지방과 협정이나 합의를 개시할 수 있다.
- (3) 각료(The Minister)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캐나다의 다문화 정 책을 지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 협정이나 합의를 개시할 수 있다
6. (1) 각료(The Minister) 이외의 장관들은 각각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 수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 각하는 수단을 취할 수 있다.
- (2) 각료(The Minister) 이외의 장관들은 캐나다의 다문화 정책의 수 행에 관하여 다른 지방과 협정이나 합의를 개시할 수 있다.
7. (1) 각료(The Minister)는 이 법의 수행과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다 른 문제에 관해 각료(minister)에게 조언을 주고 보조하기 위 한 자문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각료(The Minister)가 적절 하다고 간주하는, 다문화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위원을 지목하고 의장과 다른 위원회의 임원들을 지목 할 수 있다
- (2) 각각의 위원회 위원은 각료(The Minister)가 정한 서비스에 대 한 보수를 받으며 위원회 일과 관련하여 그들의 일상적인 거

## 부 록

주지로부터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한 합리적인 여행 경비와 거주비용을 지급 받는다.

- (3)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매해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4개월 이내에, 그 해의 위원회 활동에과 의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캐나다 다문화 정책 수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각료(The Minister)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일 반

8. 각료(The Minister)는 매해의 회계연도 종료된 다음 해 1월 31일 이후 의회가 개최되고 5일 이내에, 그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거한 활동 보고서를 각각의 의회(상하원)에 상정한다.
9. 이 법에 의거한 운영 또는 8조에 준하여 작성된 모든 보고서는 이 목적을 위해 지정되고 설립된 상원의 위원회, 의회 양원의 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다문화 교육((메릴랜드)주 규정)

### 01 범 위

- A. 메릴랜드의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의 질과 공평성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 이 장의 의도는 지역 학교 체제의 지역 학교의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목표를 제공하고, 학교 시스템으로 하여금 다문화 교과 과정과, 지도안, 직원 개발 그리고 교육 지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학생들이 주,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 이해, 그리고 포용을 증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B. 다문화 교육은 다양성과 일반 사람들에 대해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이며, 다민족적인 여러 전문분야의 과정이다. 다양성의 요소는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성, 언어, 사회 경제 상태, 나이,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개인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든 과목에서 교육적인 주입과 교육 전략을 포괄한다.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쁨으로써 독립적인 국제사회에서 창의적으로 살고, 배우고, 반응하고 일하도록 준비시킨다.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의 창출을 지지하는데 지역 사회와 학부모의 관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이다.
- C.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교사들은 보편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 02 정 의

- A 이 장에서, 다음 용어들은 지정된 의미를 가진다.



B. 정의된 용어들

- (1) “편견”이란 정신적인 기댐 또는 경향 또는 치우침을 의미한다.
- (2) “평범”이란 공통의 특성, 성격 또는 특징 또는 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문화적 집단”은 인종, 민족, 지역, 성, 언어, 사회 경제적 상태, 나이 또는 장애 등의 요인에 의해 구분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 (4) “문화적 언어상의 각각의 문화 집단에 있는 언어적으로 독특한 양식을 의미한다.
- (5) “차별”이란 편견에 의해 촉발된 배제의 행위를 의미한다.
- (6) “다양성”이란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성, 언어, 사회 경제적 상황, 나이, 그리고 장애에 한정되지 않지만 이에 근거한 차이점을 의미한다.
- (7) “민족성”이란 다른 인종 집단의 구분 또는 제휴 또는 사람들의 국적 상 구분을 의미한다.
- (8) “메릴랜드 학교 수행과 평가 프로그램”은 다음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읽기, 쓰기/ 언어 사용, 수학, 과학과 사회 과목의 3, 5, 8 학년 및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 (a) 학교와 학교 시스템의 책임 취지, 특히 메릴랜드 학교 수행 보고서; 그리고
  - (b) 학교 개선과 계획
- (9) “메릴랜드 학교 수행 프로그램”은 각각의 메릴랜드 공립학교 학생들의 성취를 보장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각의 학교가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인종, 민족, 성,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 평가를 토대로 개개 학교의 수행을 평가할 책임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접근법을 의미한다.

- (10) “다원주의 사회”는 민족적 기원, 문화적 패턴, 종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서 명백하게 구분되는 집단의 국가나 사회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 (11) “편견”은 암시적이고, 사전에 형성된, 그리고 비합리적인 판단 또는 의견, 보통 의심, 공포, 불관용 또는 증오에 의해 형성된 비호감인 것을 의미한다.
- (12) “인종 파별주의”는 인종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와 태도를 의미한다.
- (13) “성차별”은 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대우와 태도를 의미한다.
- (14) “고정관념”은 특정 집단의 모든 개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 03 프로그램들

- A. 공공 학교는 사회에서의 문화적 집단에 대한 지식, 이해, 고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함시켜야 한다.
- B. 교육부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1) 이 장의 수행을 돕기 위해 직원 개발과 다른 형태의 기술 보조
  - (2) 학교를 위한 교육 자료를 평가하고 고르는데 있어 지역 학교 시스템에 의한 사용을 위한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은 적절한 인식을 문화 집단에 주어야 한다.
  - (3) 주석이 달린 자원은 다음과 같이 지도해야 한다.
    - (a) 지역 학교 체제가 적절한 교육과, 교과 과정 그리고 직원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 (b) 정의된 다문화 교육의 종합이다; 그리고

(4) 메릴랜드 학교 수행 프로그램의 결과와 모든 이론을 위한 교과 과정상의 하부 구조의 다문화적 목적의 교차 참조된 매치.

C. 모든 국가 활동에서의 다문화적 초점은 각각의 과목에서의 평가, 출판, 그리고 교과과정상의 구성을 포함해야 한다.

#### 04 목 적

A. 이 규정의 B-D 장에 있는 지도안은 5년이 필요한 평가와 계획 주기에 따른 디자인, 경영, 수행 그리고 다문화 교육 평가에서의 지역 학교 시스템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지도 안들은 교과 과정, 지도, 그리고 직원 개발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은 목표와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 B. 교과 과정

(1) 목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위한 통합 교육의 일환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에서의 문화적 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예비 K-12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 그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 주, 국가, 그리고 세계의 민주적 과정에 온전히 참가하기 위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아시아계 미국인들, 라틴계, 미국 원주민, 여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배제와 오해를 고치는 것을 강조

(b) 문화적 집단의 역사와 그들의 메릴랜드, 미국, 전 세계에서 의 공헌

(c) 역사적 사건, 상황, 갈등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부터 나온 해석

(d) 문화적 집단이 경험하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

(e) 개인들과 집단들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 인종차별, 성 차별, 편견의 문제들

- (2) 목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위한 통합 교육의 일부로써 미국에서의 문화적 집단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예비 K-12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것. 그 교과 과정은 학생들이 다음의 태도와 행동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 (a) 개인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
  - (b) 개인 자신의 전통 이상으로 다른 이의 전통의 독특함을 존중하는 것
  - (c) 문화적 다양성과 일반성의 풍부함을 인정하는 것
  - (d) 전 세계 다양한 문화적 집단을 존중하는 것

C. 지시 사항

- (1) 목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위한 통합 교육의 일부로써 문화적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학생들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K-12 교육을 제공하는 것.
- (2) 이 교육용 프로그램은:
- (a)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교 환경을 장려한다.
  - (b) 다른 문화적 언어 패턴이 존중되는 학교의 환경을 장려한다.
  - (c)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을 배치하는 것을 장려한다.
  - (d)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학생들이 동등하게 엄격한 학문에의 접근이 부인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e)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학습 스타일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교육적 활동 방식을 사용한다.
  - (f) 인종 차별, 성차별, 선입관, 차별, 그리고 편견에 대해 역점을 두어 다룬다.
  - (g) 문화적, 민족적 이해를 촉진하는 기관을 이용한다.

- (h)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다양한 소통의 방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촉진하는 교육적 활동을 이용한다.
- (i) 국가로서의 우리의 일반적 배경을 인식하는 한편 독립적인 세계 속의 다양한 사회로서의 미국의 개념을 강화시키는 교육 자료를 사용한다.
- (j) 모든 과목 영역에서의 다문화 교육 자료를 통합한다
- (k)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현행의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D. 직원 개발

- (1) 목표. 학교 시스템상의 직원이 다문화 교육을 디자인, 관리, 수행, 평가하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직원 개발을 포함하는 것.
- (2) 이 규정의 D (1)장에서의 경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그들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태도와 감정을 조사하는 전문가와 보조 직원을 포함하는 활동.
  - (b)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전략, 기술, 그리고 자료를 감정하는 활동
  - (c)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온 학생들의 사전 지식, 태도, 능력, 그리고 학습 스타일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훈련
  - (d) 고정관념, 차별, 선입관 그리고 편견을 인식하고 고치기 위한 훈련
  - (e) 더 큰 집단 간 이해를 키우기 위한 훈련
  - (f) 교과과정과 교육에서 집단과 개인의 배척과 잘못된 이해를 인식하고 고치기 위한 훈련
  - (g)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온 학생들과 직원들에 의한 학교에서의 불공평한 참여 활동을 인식하고 고치기 위한 훈련
  - (h) 다문화 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감정하기 위한 훈련

## 05 교육 자원에 대한 기준

- A. 목표. 문화적 집단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보여주는데 있어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것.
- B. 다음의 최소한 기준을 모두 포함하는 다문화 자원의 선택;
  - (1) 고정관념, 차별, 선입관과 편견을 피하는 방법
  - (2) 문화적 집단과 개인들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는 요소
  - (3) 다문화로서의 사회를 나타내는 내용에 관한 교육 자료들
  - (4) 학생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돕는 인력 자원.

### 05-1 학교 안전

메릴랜드의 모든 공공학교 학생들은, 예외 없이, 다음의 교육 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다.

- A. 안전;
- B. 학문적 성취를 위한 최적의
- C. 어떤 형태의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움

## 06 계획

- A. 지역 학교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하는 1994년 9월 1일부터 5년 주기로 평가와 계획을 세워야한다:
  - (1) 차후의 수요를 평가하고 개발, 수행하는 것;
    - (a) 학부모들, 사업가들, 학생들, 그리고 전문, 보조 교육 직원을 포함한다.
    - (b)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된 차별 없는 분석에 기초한 소견을 포함한다.

- (2) 교과 과정, 교육 안, 교육 자료, 직원 개발, 환경, 그리고 자료 채용 과정을 포함한 각각의 계획에 요구되는 요소들 속에서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된 전략 수행;
  - (3) 지역 차원에서 수행 상태와 계획 수정을 이 규정 수행의 언급하면서, 두 번째 해의 시작에 연간 경과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
- C. 지역 학교 시스템은 1999년 시작으로, 각각 할당된 주기의 6월 30일까지 검토와 논평을 위해 미 교육부에 5년짜리 다문화 교육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D. 미국 교육부는:
- (1) 1999년을 시작으로 계획 검토를 한다.
  - (2) 계획안이 제출된 해에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 학교 감독자들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 07 평가

- A. 미 교육부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교과 과정, 교육, 직원 교육, 그리고 교육 자원의 수행에 대하여 지역 학교 감독자들이 제출한 연간 진행 보고서를 검토해야만 한다. 진행 보고서의 편찬은 교육 위원회에 해마다 보고되어야 한다.
- B. 미 교육부는 각각의 과목에서 다문화 전략과 내용을 적용하는 테스트하는 예비 K-12 메릴랜드 학교 수행 평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C. 교육부 장관은 진행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할 직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장을 이행하는데 있어 지역 교육 위원회가 필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



## 미국 뉴멕시코주 Article 23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 22-23-1.1. 입법부의 조사결과 (2004)

- A. 뉴멕시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주-연방 복합 자금은 2003년 4,100만 달러였으나, 이 자금은 직접적으로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 B. 뉴멕시코 주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목적은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 (1) 영어와 함께 스페인어, 문자 형식이 존재하고 종족 허가가 있는 북미원주민 언어, 또는 그 밖의 언어를 포함한 제2의 언어로 글을 읽고 쓸 수 있고,
  - (2) 모든 과목에 있어서 뉴멕시코 주의 교육 기본 기준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 C. 지역들은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입문, 정착시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
- D. 학생들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는 주와 정부 지원 자금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책임 평가가 필요하다.
- E. 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 Act 2001은 주의 자금을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F. 뉴멕시코 주 헌법 Section 8, Article 12에서는 교육 수단으로서의 이중언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 G. 지역의 피고용인들(선생님, 보조 선생님, 교장, 이중언어 책임교원들, 부서 관리자, 재정 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발전이 요구된다.
- (1) 조사에 바탕을 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그 집행,
  - (2)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영어 능력 발달,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최선의 학습방법,
  - (3) 학업적, 언어적 발달을 위한 수업평가.
- H. 학부모들 또한 교사들과 지역의 피고용인들과 함께 어떤 형태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자녀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최선일지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지역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영어나 그들의 언어로 제공한다.
- I. 조사에서 따르면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학업적으로 능숙하게 습득하는 데는 5-7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아동 언어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뉴멕시코 주는 3세 이후의 아동들을 지원하기 전에 3세까지의 아동들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선한다.
- J.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관되고 학생들이 이전에 배웠던 언어 수준에 입각해서 구성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커리큘럼(지도 교재의 범위와 순서를 포함한)이 필요하다. 북미 원주민어의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지도교재는 인디언 사회의 허락 하에 쓰여져야 하고, 문서화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어적인 표준화된 커리큘럼이 시행한다.
- K.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평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학습 환경, 지도 교재와 교육 기회가 마련된다. 또

한 인디언 교육 법률의 목표를 만족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입학한 북미 원주민 학생들을 위해서도 위에 언급한 동등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배움의 환경, 지도 교재와 교육 기회가 요구된다.

L.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법률은 뉴멕시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 (1) 학생들의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 (2) 학생들의 개념적, 언어적 능력과 가능성을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 (3)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와 언어의 가치와 미를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므로 해서,
-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장려한다.

#### 22-23-2. 개념 (2004)

- A.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영어와 전통 언어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포함하는 두 가지 언어를 교육 과정에서 지도언어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B.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른””이란 문화적 배경이 미국 문화의 주류와 다르고, 가족, 부족, 모국의 전통 언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와 다른 학생을 의미한다.
- C. ““부서””는 공교육 부서를 뜻한다.
- D. ““지역”” 는 지역 내의 공립학교나 공립학교들의 조합을 뜻한다.
- E. ““영어 학습자””는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며 비슷한 학년의 영어가 능숙한 또래들이나 영어 원어민 학생들과 견주어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이해 능력이 낮은 학생들을 말한다.

- F. ““전통 언어(heritage language)””는 영어 외에 본인의 가족, 부족, 지역사회 또는 모국으로부터 물려받은 언어를 말한다.
- G.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home language)””는 본인의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말한다.
- H. ““교육 위원회””는 지역 교육 위원회를 말한다.
- I. ““표준화된 커리큘럼””은 주의 표준 학업 내용과 수행 기준에 맞춘 지역 커리큘럼이다.

**22-23-3. 폐지됨.**

**22-23-4 부서 권한 의무(2004)**

- A. 부서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규칙들을 공표한다.
- B. 부서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법률의 조항들을 시행하고 관리한다.
- C. 부서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돕는다.
- D. 부서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관리를 위해 인원을 고용할 때, 특성화된 이중언어 교육을 받은 뉴멕시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22-23-5.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2004)**

- A. 교육위원회는 부서에서 공표한 규칙들에 따라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를 준비하여 부서에 제출한다.
- B. 정기적으로 지역의 교육위원회와 학부모 자문위원회는 계획서의 목표와 우선사항들을 검토하고 부서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 C.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에서 시행되며 지역의 일반 학업 과정의 부분으로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참여는 인종, 피부색, 국적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다.
- D. 각 지역은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효과와 교육 자금 활용의 평가를 위해 학업 성취도와 언어 숙달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1년마다 갱신한다. 부서는 이 데이터를 1년마다 적합한 잠정 입법 위원회에 보고한다.
- E. 지역은 그 지역의 피고용인들(선생님, 보조 선생님, 교장, 이중언어 책임교원들, 부서 관리자, 재정 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발전을 제공한다.
  - (1) 조사에 바탕을 둔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그 집행,
  - (2)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영어 능력 발달,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최선의 학습방법,
  - (3) 학업적, 언어적 발달을 위한 수업평가.
- F.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전문성 발전 계획의 일환이다. 이중언어 교육자들(선생님, 보조 선생님, 교장, 이중언어 책임교원들, 부서 관리자, 재정 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전문성 개발·연수 과정에 참여한다.

**22-23-6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주 재정 보조 적격성 (요건)**

- A. 주의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각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1) 프로그램은 북미 원주민 아이들과 참여하고자 하는 유치원에서 12세까지의 다른 아이들(3세까지의 아동들을 우선으로)을 포함하는 지역의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위하여 제공된다.

## 부 록

- (2) 자금 보조는 영어와 가정에서 쓰는 언어 둘 다 능력 향상이 확실히 요구되는 3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 (3) 프로그램의 학년 커리큘럼의 전체 또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4)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초-중등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을 두 가지 언어로 교육받은 선생님을 고용한다. 선생님과 다른 연수 받은 사람들은 두 언어에 대한 언어 향상 평가를 각 언어를 모두 숙달할 때까지 시행한다.
  - (5)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가정이나 전통 언어와 결부된 문화와 역사를 강조한다.
  - (6)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평가를 위한 보조와 자문을 위해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를 대표하는 학부모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다.
  - (7) 이중언어 다문화 프로그램의 시행 전에 일년마다 학부모들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B. 주의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서 각 이중언어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은 위의 각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며,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